KOTRA자료 23-198

구조조정 가이드북

인도네시아 GUID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조조정 가이드북(인도네시아) GUIDE

I.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철수 개요 04

1.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구조조정 배경 06
2.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유형 07
3.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철수 형태 08
4.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이 철수할 때 고려할 요소 12
5. 구조조정 방식의 결정 20
6. 구조조정 절차 25

II. 지분양도 26

1. 지분양도의 개요 28
2. 매도 전략 수립 29
3. 매수자 탐색과 확보 30
4. 비밀유지협약서 및 양해각서 체결 31
5. 기업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 34
6.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38
7. 주주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진행 38
8.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지분, 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40

III. 해산청산 42

1. 해산과 청산의 개념 44
2. 해산청산 전 준비작업 45

3. 해산청산 시 자산 처분 ····· 47
4. 해산청산 시 직원정리 이슈 ····· 48
5. 해산청산 관련 세무 이슈 ····· 49

IV.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해산 상세 프로세스 52

1.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에 따른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 ····· 54
2.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OSS)상에서의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 진행 ····· 69
3.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 72

V. 파산청산 78

1. 인도네시아에서의 파산청산 ····· 80
2. 파산의 정의 ····· 80
3. 파산의 원인 ····· 81
4. 파산 절차 규정 ····· 81
5. 파산신청 요건 ····· 82
6. 인도네시아 상사법원 목록 ····· 83
7. 파산 절차 ····· 84
8. 파산선고에 따른 해산 ····· 84
9. 파산과 지급 불능/부도의 차이점 ····· 86
10. 파산의 법적 효력 ····· 86
11. 인도네시아 파산법 ····· 87

I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철수 개요

1.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구조조정 배경 ····· 06
2.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유형 ····· 07
3.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철수 형태 ····· 08
4.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이 철수할 때 고려할 요소 ····· 12
5. 구조조정 방식의 결정 ····· 20
6. 구조조정 절차 ····· 25

I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철수 개요

1.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구조조정 배경

인도네시아는 석탄, 니켈, 주석, 보크 사이트 등 풍부한 자연 자원과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규모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깔리만딴섬 누산따라로 옮기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원부국과 인구대국이라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핵심 국가의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2022년 5월 현재 2,145개의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여 간의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1년이 넘는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철수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이나 철수에 관한 지식과 준비가 미흡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거나, 폐업 허가를 종료하지 않은 채 철수하여 후에 임금 체납, 세금 미납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규를 숙지하여 구조조정과 철수에 관해 철저한 준비와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당시의 법인 설립 형태에 따라 구조조정 방법도 다르므로 기업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를 알아보고,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조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유형

1) 외국인 투자 법인 (Foreign Investment Company)

외국인 투자 법인은 인도네시아어로 PMA(Penanaman Modal Asing)라고 하는데 지분율과 업종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1) 100% 외국인 지분 회사

(2) 일부 외국인 지분과 현지인 지분의 공동 투자 회사

인도네시아는 "2020년 제11호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2021년 제10호 외국인 투자 개방 및 허용 조건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의 두 가지 외국인 투자 회사의 형태는 이들 법령에 의해 구분된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최저 금액은 한 업종당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연락 사무소는 본사의 실체를 그대로 인도네시아에 등록한 형태이다. 즉 인도네시아에서 요구하는 한국 본사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에 등록한 후 해외 시장 조사와 연구 개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3) 현지인 명의의 로컬 회사

투자법상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업종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인 명의를 임차하여 로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회사는 투자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PMDN(Penanaman Modal Dalam Negeri): 자본금 10억 루피아 이상

(2) SN(Swasta Nasional): 자본금 5억 루피아 이상

(3) CV: 자본금 5천만 루피아 이상

이처럼 각기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각 기업의 철수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진출 형태별 법인 철수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철수 형태

1) 연락 사무소 철수

연락 사무소는 본사를 인도네시아에 등록한 형태로서 주주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정식 법인과 같은 철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총을 개최하지 않아도 되고, 청산인을 선정할 필요도 없다. 단지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납부한 후 NPWP(세적등록증) 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 취소 신청을 할 때는 최종 마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의 세무 감사를 거쳐 NPWP 취소 결정서(SK Penghapusan NPWP)를 받으면 철수가 완료된다.

2) 현지인 명의의 로컬 회사 철수

현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로컬 법인은 명목상의 주주나 경영진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철수 이후 발생하게 되는 모든 법적 책임이 현지인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자본금 불입이나 경영은 외국인이 하기 때문에 법인 폐업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만일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지인 주주나 경영진에게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외국인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명목상의 주주이면서 경영진인 현지인들이 자신들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경영 행위는 외국인이 하였다고 신고할 경우, 외국인은 경찰 수배나 출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지인 법인의 구조조정이나 폐업도 외국인 투자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3) 외국인 투자 법인의 철수

외국인 투자 법인은 다양한 기업 철수 전략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철수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식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구조조정 방법과 정식 폐업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정식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는 지분 또는 자산 양도를 통한 인수, 합병, 통합, 분리 등이 있으며, 정식 폐업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는 해산과 파산 등이 있다.

4) 법인 실체를 유지하는 구조조정 방법

법인 실체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에는 흔히 M&A(Mergers and Acquisitions)라고 하는 인수합병이 있는데, 이는 주식 양수도 또는 자산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이양하는 방법이다. 우선 M&A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일반적인 M&A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인수합병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뜻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거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인수합병은 인수하는 기업과 인수되는 기업 양측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인수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인수되는 기업(타깃 기업)은 재정적 지원 또는 인수 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 대규모 기업에 인수되어 기존의 회사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인수합병은 종종 스타트업 기업이 대기업의 자원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위와 같은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양측 회사의 이사회는 각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감사회, 주주총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M&A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가) 인수 (Acquisition / Pengambilalihan)

인수란 자연인 혹은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법률 행위를 뜻하며, 그 방식으로는 주식 인수(Stock Acquisition)와 자산 인수(Asset Acquisition)가 있다. 주식 인수는 인수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타깃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다음 장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자산 인수는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의 일부 또는 전체 자산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얻는 방식이다.

나) 합병 (Merger / Penggabungan)

합병이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모든 자산을 흡수함으로써 흡수하는 회사는 계속 존재하나 흡수되는 회사는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게 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다) 통합 (Integration / Peleburan)

통합이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한 개 회사를 만들어 기존 회사의 모든 자산이 새로운 회사의 자산이 되게 함으로써 기존 회사는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게 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라) 분리 (Divesture / Pemisahan)

분리란 한 회사가 자사의 전 자산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자사의 일부를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을 분리시키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5) 법인 실체가 소멸하는 구조조정 방법

정식 청산 절차를 거쳐 철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철수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고자 한다.

• 폐업 (Closing Down / Penutupan)

폐업이란 영업 행위 즉 매입과 매출을 더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사업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계속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대표자 역시 민사, 형사상의 법적 문제를 부담하게 된다.

• 청산 (Liquidation / Likuidasi)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청산으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며 청산 등기를 하면 법인 등기부를 폐쇄하게 된다. 폐업과는 달리 청산한 경우에는 법인을 다시 살릴 수 없다. 이처럼 청산은 회사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결정 즉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채권자들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이 법인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잔여 재산이 있으면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청산은 해산청산과 파산청산으로 구분된다.

• 해산 (Dissolution / Pembubaran)

해산이란 자발적인 청산으로,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또는 정관에서 정한 회사 존속의 연한 종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과 같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산 이후에는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청산인(Liquidator)을 지정하여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남아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가능하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서 승인해 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된다.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의 해산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산인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대해 법원에 파산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돼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파산 (Bankruptcy / Kebangkrutan)

법인 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다. 법인 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을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추가 손해를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법인에 재산이 남아 있지만 채무가 잔여 재산보다 많을 경우 또는 주주나 거래처가 많아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잔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법인 해산과 법인 청산이 불가능하여 법인 채무는 법인 파산으로밖에 정리할 수 없으며, 주주나 거래처가 많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럴 때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서 정리하면 훨씬 쉽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으면 대표 이사는 자산 또는 부채의 관리, 처분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리인(Kurator)이 이 권한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법인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과 법인의 채무가 소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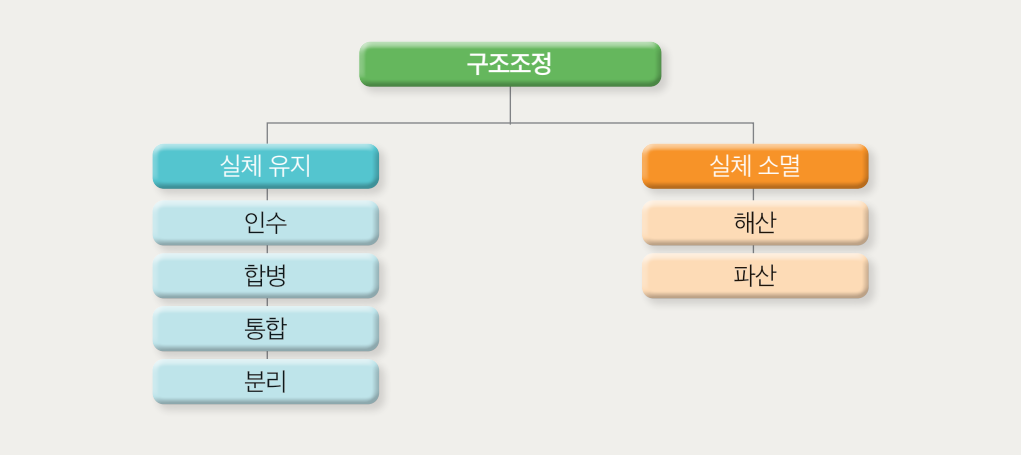

앞에서 설명한 구조조정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법인의 실체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가장 용이한 접근 방안은 주식 양수도이다.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들은 생산업무 및 비즈니스 관련 업체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주식 양수도 방안을 이용하면 매각 가치를 효율적으로 계산하여 회사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발채무 및 기타 세무 이슈 등도 이전되어 신용이 없으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법인 실체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철수하는 방식이 대다수이며, 부채비율이 높다면 파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거나 신설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이 철수할 때 고려할 요소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다른 국가와 다를 수 있으며, 철수 과정에서 법률적, 재무적, 인적 측면 및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철수와 관련된 법률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법률상 제약사항 확인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철수에 관한 법률은 분야별로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조정 관련 인도네시아의 법률	구조조정 관련 한국의 법률
일자리 창출(Cipta Kerja)에 관한 법률 2020년 11호	상법
인도네시아 파산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개인소득세법
인도네시아 노동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	법인세법
유한 책임 회사에 관한 법률 2007년 제4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근로관계 종료(해고)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13호	외국환거래법
한-인도네시아 조세협약	

(1) 청산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청산 절차 규정이 다르므로 청산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때는 양국의 청산 규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제약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양수도에 대한 절차 규정은 인도네시아 유한책임에 관한 법률 2007년 제40호, 특히 해산 및 청산을 자세히 설명하는 주식회사법 Pasal 142-15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청산 관련 법률 및 절차는 'III. 해산청산'과 'V. 파산청산'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2) 주식 양수도에 따른 구조조정

주식 거래를 통해 구조조정을 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소재지와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의 매수자 혹은 매도자에게는 외환 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식 양도 및 인수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의 조세 협약으로 인해 거래 금액에 대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가) 준비 단계

사전 준비를 할 때 거래성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상대 기업의 법령 및 정관에 주식 양수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 탐색 단계

탐색 단계는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지 그 거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거래별 형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식 양수도 형태 또는 방법을 찾고 그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실사 단계

실사 단계는 ⓐ예비검토 단계와 ⓑ실질실사 단계로 구분된다. ⓐ예비검토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거래 조건을 정할지를 숙고해야 하고, ⓑ실질실사 단계에서는 실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실질실사 단계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계약 확정서에 명시하고, 그 위험성을 미리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 계약 단계

계약 단계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래 조건의 수용 범위와 수준을 미리 깊이 있게 협의하여 협상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종결 단계

종결할 때는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 외에도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도록 거래 선행 조건, 확정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결제 방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기간과 비용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철수를 진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비용 지출이 예상보다 크므로 신속한 구조조정과 철수 과정을 통해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청산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

인도네시아에서 청산 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절차	예상 소요기간	비고
주총-청산 결의	1~2주	- 법무부의 폐업 허가 취득, 청산인 지정
채권 채무 정리 자산 처분	1~3개월	- 각종 인허가 또는 면허 취소 신고 예) 보세 허가(KB, GB): 관세청 감사 - 업종별 특수 허가 취소
투자청 폐업 신고	1개월	- 투자청 폐업 허가 진행 기간 동안 분기별 투자 현황 (LKPM) 보고 지속
폐업 회계 감사 보고서 작성	1개월	- 은행 거래 폐쇄 - 폐업에 대한 결산 및 회계 감사
세적 등록증 취소 신청 및 세무 감사	6개월~1년 이상	- 폐업 신청서 세무서 제출 - 대차대조표 잔액 "영(Zero)"으로 작성 - 폐업 회계 감사 보고서 첨부 - 세적 등록증 취소 허가 결정서 발급
청산 완료	1개월	- 법무부 청산 완료 확인서 발급
관보 공지		
폐업 정관	7일	- 자산 부채 정리 완료에 대한 청산인 동의 정관 작성
신문 공지	60일 대기	- 청산인이 동의하였다는 사실 공지
관보 공지		
폐업 정관	7일	- 청산인이 청산 완료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하였다는 정관 작성
상호명 취소	8개월	- 청산 완료 정관을 기초로 상호명 취소
신문 공지	60일 대기	- 청산 완료와 상호명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신문에 공지
관보 공지		

가)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하려면 먼저 대표 이사 또는 주주 명의로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 일과 장소, 시간 등이 명기된 초청장이 개최일 2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청산 안건은 참석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나) 채권 채무 정리 및 자산 처분

주주총회에서 청산이 결의되면, 채권 채무 정리를 하기 위한 자산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처분할 자산이 총자산의 50% 이상이면 주주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하며, 50% 미만이면 감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다) 투자청 폐업 신고

주주총회 결과 폐업 정관이 작성되고 법무부에서 폐업 허가서를 발급받았다면, 폐업 정관과 폐업 허가서를 투자청에 제출하여 폐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폐업 회계 감사 보고서 작성

해외 투자 법인이 폐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인 회계 감사를 통한 폐업 감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를 폐업 정관, 법무부 폐업 허가서, 투자청 폐업 허가서, 폐업 신청서(Permohonan Pencabutan NPWP)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폐업 신청이 접수된다.

- 폐업 회계 감사 보고서는 자산 또는 부채의 잔액이 전혀 없는 "영(Zero)" 상태의 재무제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은 유동 자산(현금, 예금, 선납 세금, 재고 자산)과 고정 자산(토지, 건물, 기계, 비품) 등은 모두 매각하여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부채(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미납 세금, 선수금, 미지급 급여)도 모두 지급을 완료하여 채권, 채무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 또한, 폐업 허가 진행 과정 중에 각종 인허가, 예를 들어, 보세 창고 허가(Gudang Berikat), 보세 허가(Kawasan Berikat), 건설 면허, 식약청 허가(BPOM), 보건부 허가(Departmen Kesehatan)와 같은 특수업종 허가 및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

마) 세무 감사

폐업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는 먼저 SPPKP(부가세) 번호 취소를 위한 세무 감사를 진행하여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부가세 번호 취소 결정서를 발급한다. 그 후 NPWP(소득세) 세적 등록증 취소를 위한 세무 감사가 진행되고,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연 이자(매월 2%)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미납 세금이 없다면 최종 세적 등록증 취소 허가 결정서가 발급된다.

위와 같은 순서로 폐업 허가가 완료되어, 관련 폐업 허가서 또는 결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폐업을 통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

(2) 주식 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

보통의 중소기업이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절차	예상 소요 기간	비고
전략 수립 및 목표 설정	30일	
주식 인수 기업 수배	30~60일	산업 시장 조사, 금융 비즈니스 매체, 투자 은행 등을 통해 수배
비밀 유지 협약 양해 각서 체결	15~30일	
기업 실사 및 가치 평가	30~60일	인허가/세무 회계/영업/생산/사업 계획
주식 매매 계약 체결	15~20일	계약서 보완
주식 변경 등록	20~30일	법무부, 투자청, 세무 신고 및 외국환거래 신고
계약 완료	15~20일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먼저 구조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전략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 후 주식을 인수할 기업을 산업 시장 조사 또는 금융 비즈니스 매체와 투자 은행,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수배한다. 주식 양수도를 통한 매각사의 주식을 인수할 기업이 정해지면 비밀 유지에 관한 조약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사를 통해 회사의 재정 상태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따른 법적인 변경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주식의 소유권을 변경하여 계약을 완료하게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I. 지분양도'에서 하고자 한다.

(3) 경영권 변동에 따른 고용 승계

경영권 변동에 따른 고용 승계 문제는 새로운 경영진의 고용 승계 의지에 따라 또는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산 또는 파산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폐업할 경우에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정해진 대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경영 부실로 인해 적자가 계속된 경우에는 노동부에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정산하면 된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의 중재를 따라야 한다.

이와는 달리, 회사가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주식 양수도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경우라면 노동법에 정해진 대로 근속 연수의 1배와 장기 근속 수당, 미사용 휴가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사례

A회사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지역에서 전자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였으나,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었다. 이에 경영진은 임의로 자산을 일부 정리하여 직원들 모르게 야반 도주를 감행하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인 직원을 감금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대사관을 찾아가 시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태는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고, 대사관 측에서 한국 본사에 연락을 취하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일단락 되었다.

시사점 회사의 사정으로 법인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근로보호법과 근로관계법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며, 회사의 경제사정을 잘 이해시켜 노사 간의 합의를 잘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영업 비밀 및 기술 (Know-How)

회사의 영업 비밀과 기술은 타사와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구조조정을 통해 타사에 이전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주의 깊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첫째, 영업 비밀이나 기술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기밀 유지와 법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을 통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인원을 선정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선택을 통해 어떤 영업 비밀과 기술을 공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하고, 핵심 기술이나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식 이전 과정에서 관련 규제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지식 재산권, 민사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넷째, 관리 직원의 이직이나 파트너사 직원의 이동 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직자나 새로운 파트너사의 직원에게 기밀 유지 의무 사항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와 같이 법적, 제도적으로 영업 비밀이나 기술 이전에 따른 위험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세무 리스크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이 철수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세무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입장에서 기업이 구조조정에 따라 청산을 신청하는 시기는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하게 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청산 절차의 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청산 기업이 세적 등록증(NPWP)의 취소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제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세적 등록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 세적 등록증 취소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폐업 재무제표 작성 방법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회계 감사 보고서

2007년도 유한 책임 회사 법률 40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법인은 매년 공인 회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는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폐업 재무제표를 폐업 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대차대조표 잔액 정리

모든 대차대조표상의 잔액을 정리하여 "영(Zero)"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금, 은행 잔액, 재고 자산, 고정 자산, 미수금 및 기타 유동 자산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부채, 외상 매입금, 미납세금, 장단기 차입금 등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가 해당 채무 변제 불이행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이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율인 22%의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이다.

(3) 주식 양수도 시 주의점

주식 양수도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주식거래이므로, 실체의 세무 리스크는 외부로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실사/재무실사/세무실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로 인해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 측에서는 구조조정을 준비할 때 추후 예상되는 매각 대상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식 양수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사례

B회사는 자바베카에 소재한 전자 부품 회사이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본사의 도움으로 모든 폐업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되었고, 직원들의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본사에서 보내준 원자재 수입 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 이는 본사와 지사 간의 특수 관계 거래에 따른 것이고,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본사로 상환할 자금 여력이 없기도 하여 수입 대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잔액을 남겨둔 채 세적 등록증(NPWP)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무 감사로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으니, 이 부채 금액을 이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22%를 추징한 것이다. 철수하는 회사로선 도저히 정상적인 경영을 할 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어서 폐업 처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어 본사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해결방안 이런 경우라면 정식으로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변호인을 통해 남은 자산으로 일부의 부채를 탕감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지불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 법적인 정리를 마치는 것이 좋다.

5)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철수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합법적인 폐업과 철수를 진행하려면 현지 법률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폐업 또는 청산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 폐업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주식 양수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 정관(AKTE JUAL BELI)을 작성해야 한다. 폐업 및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관련 문서들을 정리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5. 구조조정 방식의 결정

철수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은 해당 기업의 철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만일 해산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 폐업 정관을 작성하고, 일간 신문에 공지한 후 2개월 동안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 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을 택할 경우 지분을 100% 양도한다면 정관 변경과

주식 매매 정관을 작성하고, 역시 해당 내용을 일간 신문에 공지한 후 2개월 동안 대기하여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할 법적인 시간을 두었다가 법무부 승인서(SK KEHAKIMAN)를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지분 양수도

지분 양수도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인수하는 회사는 인수 대상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양수하는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인수하는 회사는 인수 대상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수 대상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된다.

지분 양수도를 통한 기업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a. 지분 인수 의사 표시: 인수를 원하는 기업은 대상 회사에 인수 의사를 표시한다.
b. 정보 공개 및 검토: 인수 대상 회사는 인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자는 해당 정보를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운영 방식, 재무 상태, 잠재적인 위험 요소, 장래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진행된다.
c. 가격 협상: 인수자와 인수 대상 회사는 인수 가격을 협상한다. 이는 주식의 가치, 재무 지표, 시장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양수하는 회사는 대부분 현금 또는 자사 주식으로 대가를 제시하게 된다.
d. 합병 계약서 체결: 인수자와 인수 대상 회사는 합병계획을 체결한다. 합병 계약서의 내용에는 합병 구조, 주식 양수 비율, 대가 결제 일정, 법적 합병 절차 등이 포함된다.
e. 주주총회 결의: 인수 대상 회사의 주주들은 합병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규제 및 법적 절차: 회사를 인수하려면 해당 국가의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인수 과정이 진행되며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인수가 완료된다.
g. 주식 양수: 인수자는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다. 양수 방법은 현금 지급, 자사 주식 교환 또는 혼합된 방식일 수 있다. 주식 양수 후에는 양수한 주식을 통해 인수자가 인수 대상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2) 주식 양수도

주식 양수도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주식거래이므로, 실체의 세무 리스크는 외부로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실사/재무실사/세무실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로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 측에서는 구조조정을 준비할 때 추후 예상되는 매각 대상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1) 주식 양도자가 개인일 경우

주식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거주지가 인도네시아 국내에 있는 경우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도자가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가 발생한다. 소득세율은 종합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을지라도 매매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때는 반드시 양도자가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주재 국가에 있는 기업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증빙을 세무 감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다만 양도자가 거주자증명서(DGT FORM1)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 주식 양도자가 법인일 경우

주식 양도자가 법인일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해당 소득세를 주재국에 있는 기업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증빙을 보관하여 세무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한 거주지 국가의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DGT FORM을 받아 주재국 해당 기업에 전달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영업 자산 양수도

영업 자산 양수도 방법은 인수하는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의 영업 자산을 일부 또는 전부 양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수하는 기업은 인수 대상 기업으로부터 영업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통해 인수 대상 기업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영업 자산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 시설 및 장비: 공장, 사무실, 창고 등의 시설과 제조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이 포함된다.
- 상표권과 브랜드: 상표, 로고, 브랜드명 등의 권리와 관련된 자산이 포함된다.
- 고객 및 거래 관계: 기존 고객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와 자산이 포함된다.
- 지적 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포함된다.
- 재무 자산: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무 자산이 포함된다.

영업 자산 양수도 방법은 인수하는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의 영업을 지속하고,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법은 특히 브랜드 가치나 고객 관계 등 인수 대상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전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영업 자산 양수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인수 의사 표시: 인수를 원하는 기업은 대상 회사에 영업 자산 양수도를 제안하는 의사를 표시한다.
b. 정보 공개 및 검토: 인수 대상 회사는 인수자에게 영업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자는 해당 정보를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는 영업 자산의 가치, 운영 상태, 잠재적 위험 요소 및 미래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진행한다.
c. 영업 자산 평가: 영업 자산의 가치 평가는 재무제표, 잠재적 가치, 시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영업 자산 평가는 인수 기업과 인수 대상 기업이 협상하는 데 기반이 된다.
d. 영업 자산 양수 계약 체결: 인수자와 인수 대상 회사는 영업 자산 양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에는 양수할 영업 자산의 세부 항목, 대가 결제 일정, 법적 절차 등이 포함된다.
e. 규제 및 법적 절차: 영업 자산을 양수하려면 해당 국가의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 양수 과정이 진행되며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양수가 완료된다.
f. 영업 자산 양수: 영업 자산의 양수는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 또는 자산 교환으로 이루어지며, 양수 후에 인수자는 해당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4) 자본 감자

기업이 철수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 유상 감자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유동 자산이나 고정 자산을 매각한 자금이 있을 때 해당 자금을 유상 자금 형태로 주주에게 반환하여 투자금 회수 형태로 자본금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무상 감자는 주주에게 자본 감소분을 지급하지 않고, 결손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를 거쳐 자본금 감자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하여 투자청에 자본금 감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후에는 자본금이 감소하였다는 변경 내용을 재무제표에 적시하고 이를 세무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5) 휴업

휴업이란 정식으로 철수 또는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잠시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아 휴면 상태(Non-Aktibkan)로 두는 것을 뜻한다. 차후 경기가 회복되거나 사업 운영을 재개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을 재개한다는 신고를 하면 신고 직후부터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휴업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 폐업이나 구조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무서에서는 이런 휴업의 본 취지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업 신청도 폐업으로 간주하고 정식 세무 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무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6) 연락 사무소 철수

연락 사무소의 철수는 크게 일반 연락 사무소(KPPA: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과 건설업 연락 사무소(BUJKA: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연락 사무소는 주주나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NIB)과 세적 등록증(NPWP) 취소만으로 철수할 수 있으나, 건설업 연락 사무소 철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JO(Joint Operation)를 먼저 폐업하여 정리해야 철수할 수 있다. JO를 정리하려면 해당 프로젝트가 모두 종료되었을 때 JO의 세적 등록증(NPWP) 취소를 신청한 후 세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JO 폐업이 완료되면, 건설업 연락 사무소(BUJKA)의 사업자 등록증(NIB) 취소를 투자청에 신청하여 폐업 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세적 등록증(NPWP) 취소를 신청하여 세무 감사를 받은 후 철수할 수 있다.

7) 현지인 명의를 임차하여 설립한 로컬 법인의 철수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업종의 사업을 하려고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철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본인 명의로 로컬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본인은 당장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은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현지인이 로컬 법인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밝혀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출입국 금지 조치까지 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철수를 위한 법적인 폐업 절차를 규정대로 모두 준수하여 폐업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먼저 해외 투자 법인과 같이 폐업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지인 주주의 서명을 받아서 폐업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청에 사업자 등록증 취소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세적 등록증(NPWP) 취소를 신청하고, 세무 감사를 거쳐 취소 결정서를 받으면 모든 폐업 허가가 종료된다.

6. 구조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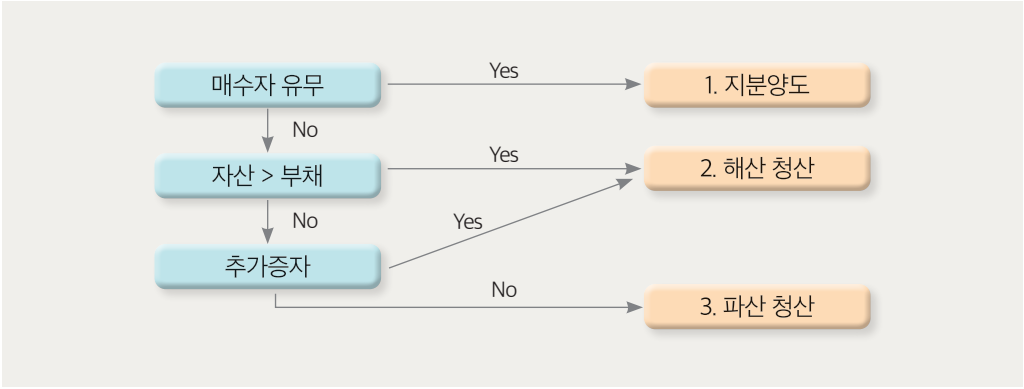

II

지분양도

1. 지분양도의 개요 ····· 28
2. 매도 전략 수립 ····· 29
3. 매수자 탐색과 확보 ····· 30
4. 비밀유지협약서 및 양해각서 체결 ····· 31
5. 기업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 ····· 34
6.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 38
7. 주주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진행 ····· 38
8.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지분, 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 40

II 지분양도

1. 지분양도의 개요

지분양도는 회사의 주식 및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매하여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나 기업의 경우,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면 자본 구조나 경영권 등에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지분양도는 주주들 간의 합의나 규제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도되는 지분의 양에 따라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지분 비율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지분양도 과정에는 법적인 절차와 규제가 따르게 되는데, 이는 각 국가와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분양도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지분양도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 기업의 성장 전략에 따라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세금, 마케팅, 자금, 거래선, 신용평가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양도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자 하거나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자신이 보유 중인 지분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보유 중인 지분의 일부분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자회사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에 존속하는 여러 법인 간의 지배 구조도 지분양도를 통해서 조정하게 된다.

2. 매도 전략 수립

매도자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하려면 매도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분양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 조사 및 분석 단계

먼저 해당 지분양도 당시의 기업 현황과 시장 조건을 분석한다. 기업 매각을 고려하는 매도자는 최적의 매각 시점과 높은 매각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자 후보들에게 투자 강점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 지역적 요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 시기와 전략을 결정한다.

■ 목표 설정

매도의 목표를 설정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매도할 것인지, 어떤 기간 내에 매도할 것인지, 얼마만큼을 매도할 것인지 등을 설정한다.

■ 가격 결정

매도할 지분의 양도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절한 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전문가의 조언이나 시장 평가 등을 고려한다.

■ 법적 및 금융적 측면 검토

매매 계약서, 부가세, 양도세 등 법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여 준비한다. 또한 매도 자금의 활용 방안과 세금 등 금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 협상 및 계약 체결

관심 있는 양수인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다. 이 단계에서 양수자와의 약속 사항 및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한다.

■ 양도 대금 수령

지분양도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매수자로부터 양도 대금을 수령한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지분양도 대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때 세금은 지분양도 대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매도자는 매도 경험이 처음이거나 매각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수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는다면 M&A 프로세스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원칙 없는 절차로 인해 거래가 무산되거나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매수자와 달리 매도자는 기업을 매각하는 계획이나 사실을 내부 및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존 거래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매도 전략 수립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3. 매수자 탐색과 확보

매수자가 없으면 매수희망자를 찾아야 하며, 있다면 지분양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희망자와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매수희망자의 신용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 범위에는 매수희망자의 법적 성격, 법적 존속 여부, 주주, 법정대표인, 재무상황, 소송상황, 상업신용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에서 구축한 기업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매수희망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자금 확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수희망자가 새로 설립한 회사인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수희망자의 인수 목적을 확인하여 양도 방식이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양도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매수자 탐색과 선정은 동종 업계 관계자나 컨설팅 업체,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기업이나 생산 공장을 보유하려는 기업, 경쟁 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도 매수자로서 고려할 수 있다.

4. 비밀유지협약서 및 양해각서 체결

매수희망자를 찾았다면 당사자 간의 대략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지분양도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 간에 신뢰와 협력이 없다면 장시간의 노력에도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양사의 첫 대면과 면담 과정에서부터 상호 간에 돈독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 협상 단계에서는 양사의 거래 의사만 확인되었을 뿐 거래 구조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목표를 감안한 논의를 통해 거래 구조를 점점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더라도 그러한 거래 구조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거래 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양 당사자 간 지분양도에 대한 비밀유지협약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 MOU 체결은 지분양도 절차 중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당사자 간 의사 표시가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이미 확인되었다면 이후 보안 유지를 위한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비밀유지협약서(NDA)는 M&A와 같은 거래에서 상대방의 비즈니스 정보를 공개 받기 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비밀 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공개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남용할 경우 이에 상응한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도자가 비밀유지협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태, 재무 및 영업 활동 등 기업의 전반적 상황과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 그러한 후유증은 주로 매도자 측이 모두 떠안게 된다.

영업 비밀 보호와 별개로 대상 회사의 지분 매각 및 지분양도 협상과 관련된 사항 자체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지분양도 계획은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의 매각은 회사 직원과 거래처 등에도 큰 동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

은 단계에서 지분 매각 계획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분 거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경쟁사나 직원에게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이에 충분히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2) 양해각서(MOU) 체결

양해각서(MOU)란 '정식계약 체결 전에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뜻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MOU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합의서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MOU 사용 여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전반적 문언의 내용, 취지,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MOU에 당사자를 구속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MOU를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 확정적인 표현이 있거나 MOU상에 갑의 '권리와 의무', 을의 '권리와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는 법적인 구속력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갑의 역할', '을의 역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MOU상의 법적 구속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도에 결렬되어 양사 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일 것이다. 즉, 어느 일방이 중도에 거래를 중단한 상황에서 그러한 중단이 위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OU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통 MOU는 (i) MOU 체결 목적, (ii) 현재까지의 합의 내용, (iii) 성실한 협의의 진행, (iv) 비밀 유지 의무, (v) 배타적 협상 기간 및 유효 기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분양도 MOU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1) MOU 체결 목적과 주요 거래 조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분양도 관련 MOU 체결 취지와 MOU 체결 시점까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협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겠다는 등 신실성을 포괄적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양도하는 지분의 범위와 양도가액 등을 기재한다.

(2) 기업실사에 대한 내용

지분양도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흔히 '대상회사'라고 부른다. MOU에는 대상회사의 기업실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 실사의 목적, 범위, 방법 등 시행 계획
-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기간
-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책임 및 손해 배상 등에 대한 책임과 규정
- 실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한 규정
- 양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등

기업실사를 할 때는 대상회사가 실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실사 일정 등을 포함하여 실사비용을 약정해야 한다.

(3) 배타적 협상 기간 설정

본 계약에 앞서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향후 기업실사 후 지분 매각 협상이 결렬되는 등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 유효기간과 배타적 협상기간 조항을 약정할 필요가 있다. MOU에서 배타적 협상 기간 규정을 삽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시간적 여유 확보: MOU에 배타적 협상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양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제3자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 협상의 효율성 제고: 배타적 협상 기간에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 협상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상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 경쟁 업체의 방해 방지: 배타적 협상 기간에 다른 경쟁 업체가 대상회사에 접근하여 양도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협상 기간이 정해지면 매도인 측은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 협상 내지 접촉이 금지되고, 매수인도 이 기간에 유사한 업종의 잠재적 매도인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여러 잠재적 매수인 또는 매도인과 협상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를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를 종료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협상 기간 및 실사 기간에 대상회사의 중요 자산 처분, 사업 영역 변경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기도 한다. 매도인이 동시에 여러 매수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 배타성 조항 유무와 그 위반소지에 대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협상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큰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배타적 협상을 약정하더라도 상대방의 물밑 거래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사법 조치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배타적 협상 약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만약 약정한 기간 내에 기업실사 등이 완료되지 않거나 협상이 지체되면 과감하게 협상을 종료하고 다른 매수인을 탐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5. 기업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

1) 기업실사 (Due Diligence)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M&A에서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 법률, 세무, 운영 등의 상태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기업실사는 인수 가격을 결정하고, 인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며 인수 계약서의 조항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기업실사의 목적은 거래 상대방이 대상회사의 가치와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래의 가격과 조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기업실사는 양 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매각, 인수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한다. 기업실사는 실사과정과 서류검토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이나 미처분된 잉여금 등 사업체에 남아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과세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실사는 일반적으로 예비실사, 본 실사, 정산실사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예비실사는 사전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파악하는 과정이고, 본 실사는 양측이 지분 양수도 의사를 표출한 뒤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는 실사과정이다. 정산실사는 LOI와 MOU, 그리고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전후로 진행하는 실사 과정이다.

기업실사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회사일반, 인허가, 계약, 부동산,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환경, 보험, 소송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실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1) 기업실사의 주요 목적

매수인을 확정하였고 매수인과의 MOU 체결을 완료하였다면 MOU에서 정해진 방식과 기간에 따라 기업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실사에는 영업실사(Commercial DD, CDD), 법률실사(Legal DD, LDD), 재무실사(Financial DD, FDD), 세무실사(Tax DD, TDD) 등이 포함된다.

영업실사는 통상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시장 구조, 규모, 성장 원동력, 트렌드, Value chain 등의 시장 환경, 핵심기술의 종류, 보유업체, 차별화 경쟁력 등의 기술 환경, 시장 주요 사업자, 향후 전략 방향, 주요 경쟁 요소, 잠재 진입 사업자 등의 경쟁 요소 등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매수인 측이 M&A 거래에 대한 인수 의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인이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 대상회사의 기술이 중요할 때는 기술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MOU 체결 전에 기술실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보다 본격적인 기술실사가 재차 진행될 수 있다. 이미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업실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면 결국 법률실사, 재무실사 및 세무실사가 주요 실사 항목이 될 것이다.

매수인 입장에서 기업실사는 대상회사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회사에 내재된 리스크 내지 우발채무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사로 확인된 리스크 등을 근거로 쌍방의 협상을 거쳐 최종적인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확인된 리스크가 지나치게 중대하다면 매수인이 양수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2) 기업실사의 진행 방식

기업실사는 크게 회계법인에서 진행하는 재무실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법률실사가 있다. 재무실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의 기본 재무제표, 자산평가보고서, 감사보고서, 미수금 회수 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한다. 재무실사에서는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자료가 현황과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므로 현장에서 원자료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실사에서는 주로 지분 관계, 각종 계약서, 인허가 사항, 노무 관계, 중재 내지 소송 관련 자료를 통하여 법인 설립 이후 위법행위 여부와 향후 대상회사를 인수한 후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검토한다. 법률실사는 주로 자산의 완전성(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담보권 등의 제한이 없는지 등)과 컴플라이언스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규제 준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존속 기간이 오래된 법인은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비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다.

통상 실사기관에서 요청 자료 리스트를 보내오면 대상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료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자료를 요청하거나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므로 계약서상에 매도인이 특정 사항에 대해 담보하는 '진술과 보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술과 보증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대상회사의 조세 규정 준수 여부,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조세 위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 관련 실사이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수행한다.

(3) 기업실사 때 매도인이 주의할 사항

기업실사 과정에서는 대상회사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도 각종 담당 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대상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기관을 방문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회함으로써 소유권자, 부동산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기업실사 과정을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리스크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실사 이전에 담당 기관에 방문하여 대상회사의 법인 등기 사항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부동산 혹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다면 담당 기관에 저당권 설정 해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거래의 신속성이나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 매수인이 실사를 진행하는 주요 목적은 리스크를 탐지하는 데 있다. 리스크를 탐지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기업실사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지분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부채, 미납 세금, 진행 중인 소송,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또는 중재가 확인되면 당연히 최종적인 대금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한 기업실사 이전에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실사는 통상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별도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 실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평가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도 자체적으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동시에 기업실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2개 기업평가보고서를 모두 참고하여 지분양도가치를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용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실사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기업실사를 진행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의 영업비밀, 기술 관련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매수인이 인수를 포기한다면 대상회사 입장에서는 상업 비밀이나 기술자료가 누출될 리스크가 크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기업실사 업무는 통상적으로 대상회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와 재무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는데, 대상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문 사항을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기업실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업실사장소는 대상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그렇게 될 경우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위해 기업실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대상회사 직원이 인지하게 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로 인해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직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므로 노무 리스크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기업가치 평가

대상회사의 사업 특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준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기준법, 수익기준법, 시장기준법 등을 사용한다.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주주의 지분구조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지분구조란 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의 비율과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자들의 권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정된 기업가치 평가 결과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결과여야 한다.

6.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주식매매계약서 또는 지분양도계약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식을 매각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면 주식 매매가 아니라 증여가 된다. 기본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 매각 및 매입 계약의 대상 주식의 종류, 수량, 가격 등
- 계약 대가의 지급 방법, 시기, 조건 등
- 계약의 유효기간, 선행조건, 해제조건 등
- 계약 당사자의 보증 및 면책사항 등

기업실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는 실제 지분양도가격 확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은 기업실사를 통해 드러난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포함한다. 만일 명확하게 손실이 확인되면 대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지만, 그 현실화 가능성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어떻게 평가·조율하고 계약서에 반영할지는 협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지분양도가격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지분양도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지분 변경 등록부터 지분양도대금 지급 시기까지 전체 절차와 스케줄을 약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분양도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분양도계약서 체결일 기준으로 채무 부담 주체, 중재 혹은 소송이 발생한 경우 등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부담 주체도 경우마다 세부적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다.

7. 주주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진행

인도네시아에서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 인수, 또는 상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식 양도는 법적 행위이므로 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 또는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보통 주식회사법이라 칭함)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주식 양도는 주식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회사가 회사 설립 전에 만든 회사의 정관에 기록되어 있다.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주주는 주식 양도을 위한 초기 요건으로 회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의미한다. 이 회사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주식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권리 양도 증서에 의해 수행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권리 양도 증서 또는 비밀증서의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공증인 앞에서의 공증 증서(akta authentik, akta notaris) 또는 언더핸드 증서(akta bawah tangan)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회사에 증서 제출

그 다음으로 권리 양도 증서 또는 그 사본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이사회의 기록 및 법무부에 변경 통지

이사회는 주주명부 또는 특별등기부에 권리 양도 발생 연월일을 포함한 주식에 대한 권리 양도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권리 양도를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명부에 기재할 주주 구성의 변경사항을 법무부 장관(이하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관은 통지되지 않은 주주의 구성 및 이름에 근거하여 수행된 승인 또는 신고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다만, 위 3가지 사항에서 설명한 주식에 대한 권리 이전 절차는 자본시장 분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상장회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의 절차 외에도 주식회사법 자체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특정 분류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다른 주주에게 사전에 주식 매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
- 회사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
- 법령 규정에 따라 승인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 충족

그러나 주식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법률의 운용에 의한 권리 이전 즉 회사의 합병, 통합 또는 분리에 따른 권리 이전 또는 상속에 따른 권리 이전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주식 양도는 회사의 정관 또는 설립 증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식 양도가 승인되면,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여 새로운 주주의 이름을 포함하고 기존 주주의 이름을 회사의 정관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관 개정 후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승인을 위해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8.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지분, 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지분양도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사하지만, 지분양도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 및 회계법인과 상의하여야 한다.

1)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주식 양수도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주식 거래이므로, 실체의 세무 리스크는 외부로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실사/재무실사/세무실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로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 측에서는 구조조정을 준비할 때 추후 예상되는 매각 대상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양도자가 개인일 경우

주식 양도자가 개인이면 거주지가 인도네시아 국내에 있는 경우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도자가 인도네시아 국내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없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한다. 소득세율은 종합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을지라도 매매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경우 반드시 양도자가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주재국에 있는 기업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증빙을 세무 감사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다만, 양도자가 거주자증명서(DGT FORM1)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 주식 양도자가 법인일 경우

주식 양도자가 법인일 경우에도 주식 양도 때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세를 주재국에 있는 기업에서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증빙을 보관하여 세무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DGT FORM을 주식을 양도한 거주지국의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 주재국 해당 기업에 전달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사후신고

한국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법인의 지분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해당 외국법인과 임원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관계를 맺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라고 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한국 거주자가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인도네시아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주식 매각, 해산·청산 등으로 투자를 철수하고 투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사후보고로서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6호)

III

해산청산

1. 해산과 청산의 개념 ····· 44
2. 해산청산 전 준비작업 ····· 45
3. 해산청산 시 자산 처분 ····· 47
4. 해산청산 시 직원정리 이슈 ····· 48
5. 해산청산 관련 세무 이슈 ····· 49

III 해산청산

1. 해산과 청산의 개념

해산과 청산의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개념이다. 해산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정지하고 영업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청산은 이 해산된 회사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로, 청산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회사가 완전히 소멸한다. 따라서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은 법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 해산은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청산은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에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 해산은 법인의 활동을 종료하는 것이고, 청산은 법인의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즉 청산은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며 법인격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단계로 들어가며 이때 회사의 권리 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회사가 해산 사유로 청산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데, 회사의 청산 방법에는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다. 법정청산은 법정 절차를 따라 하는 청산이고, 임의청산은 정관에 정한 재산처분의 방법(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에 정한 법인 존립기간의 만료 등)을 따라하는 청산이다. 물적 회사의 청산은 법정청산을 따라야 하고, 인적 회사의 청산은 임의청산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법정청산을 따라야 한다.

법정청산의 경우에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 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주요 청산 사무를 집행한다.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재산 처분의 방법에 따라 회사 재산을 처분하며 회사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분	해산청산	파산청산
해산 당시 재무 상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음	자산이 부채보다 적음
적용 법률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등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및 파산법 등
방법	임의적 및 행정적 청산	사법적 청산
청산인	청산대리인(Likuidator)	파산관리인(Kurator)
잔여재산 처리	투자자에게 분배	없음
법인격 소멸 시점	청산완료 신고 시	청산완료 신고 시

2. 해산청산 전 준비작업

회사의 청산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해산청산을 하고자 할 때 회사 내에 다양한 주체(공동투자자, 직원, 노동자, 채권자, 채무자, 행정부서 등) 사이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익충돌이 발생하면 법적·경제적 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청산비용을 위한 자금조달

청산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청산비용을 미리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청산비용이나 채무가 더 많다면 다음에서 살펴볼 파산절차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산절차가 아니라 청산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파산 시에 여러 가지 평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재진출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해서라도 파산절차 대신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실제 현장에서 살펴볼 때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또는 한국의 모회사가 대주주가 되어 투자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청산절차를 따라 폐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중소규모 기업 또는 영세 기업,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비용과 시간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방치해 두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의무가 계속 존재한다. 또한 회사의 대내외적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존재한다면 차후 소송/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한국에 모회사가 있을 경우 채권을 포기하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면제이익이 과세소득으로 인식되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2) 실물 정리

실물자산은 유형자산이면서 물리적인 자산을 말하며, 소유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의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3) 회사 채무의 사전 확인 및 처리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처리와 더불어 중요한 단계가 채무관계 정리이다. 채무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당연히 청산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고,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부채 목록을 작성하고 부채 상환액을 확정하며 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채무액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청산 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청산 프로세스가 개시될 때 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청산 프로세스에 방해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도면밀하게 준비한다.

4) 회사 서류의 정리와 보관

청산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세무와 관련된 자료는 세무서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동안 회사의 세무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추가 조사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5) 회사의 영업 중단에 따른 분쟁 방지

청산계약을 체결할 때 청산 일정을 잡고, 해당 일정에 맞게 청산을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차후 청산으로 인한 위약 등의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청산 일정과 관련하여 정리 중에 보증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6) 임대 공장의 원상복구 및 환경오염 문제

회사가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동안 임차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공장의 손상과 원상회복 의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라 칭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잘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해산청산 시 자산 처분

1) 자산 처분의 필요성

해산청산을 할 때는 사전에 회사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 해산청산 과정에서 채무 상환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청산 전에 회사의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회사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자산 처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산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비현금성 자산 즉 토지사용권 등의 부동산, 설비자산 및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데는 특별한 법률적 제한이 없으나, 회사의 영업권이나 주요 자산을 처분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절차적인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2) 토지의 처분

토지의 처분은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토지는 대체로 회사의 주요 자산의 하나이므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토지의 처분은 회사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토지의 처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3) 기계류의 처분

기계류를 처분할 때도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처분하기 전에 재활용 가능성, 환경 문제, 기계류 상태 파악, 관련 문서 작성 등의 사항을 고려한다.

4) 영업권의 처분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진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리킨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영업의 양수도 또는 피합병 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한다.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정할 수 있다.

4. 해산청산 시 직원정리 이슈

지분양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지만, 양수인의 요구로 인해 지분양도 이전에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직원들이 M&A 거래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는 동시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정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해산청산을 할 때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직원정리 문제이므로 고용해지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과 퇴직금 지급 등 법 규정에 맞게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이나 감원 시 노동법상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때는 해고 수당인 퇴직금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손해보상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인도네시아 고용 창출법에 따르면 고용관계 종료 사유와 근

속기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또한, 각종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의 크기는 퇴직의 사유가 회사에 있는지, 직원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년은퇴, 징계해고, 자원사직이 아니라면 대부분 퇴직금, 근속수당,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노동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는 고용을 해지하는 경우 문서로 계약 해지일 14일 이전에 계약 종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고용종료일을 정하고 합의하기 전에 구조조정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파업, 소송 등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여러 주변국과 달리 노조 활동에 유리한 정치적 배경과 문화적인 요소,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파업 등의 집단적인 노사분규가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노사 간의 조정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돌발적인 파업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가급적이면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협상하여야 한다.

5. 해산청산 관련 세무 이슈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 청산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세무당국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무 신고 및 납부가 세무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관할 세무서는 해산청산 회사가 세무 신고와 납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회계 및 세무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어떤 세무 이슈가 있는지 미리 잘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1) 체납세금 관련 문제

청산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는 회사의 세무 신고와 세금 납부가 세무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년 혹은 3년 전까지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전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서 규정에 비춰 계산되지 않은 세금이나 납부되지 않은 세금 내역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 과세하고 과세금액에 대한 벌과금을 추징한다. 특히 한국 본사에 채무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청산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하여 이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세금 환급 관련 문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때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환급세액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회사에 여러 차례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자를 세무서로 호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리 관련 회계 자료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

세금 환급 절차가 종료되어야 일반과세자 말소를 신청하고 이후에 세적 등록 말소를 신청하게 되므로 이러한 일정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세적 등록증(NPWP) 취소와 부가가치세 신고의 지속

세적 등록증의 취소는 폐업 신고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세적 등록증을 취소하기 이전에 반드시 부가세 세적 등록증(PKP)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세적 등록증(NPWP) 취소 신청을 세무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부가세 세적 등록증(PKP)과 세적 등록증(NPWP)의 취소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매월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자산 처분 과정에서의 세무 문제

고정자산을 포함한 설비와 재고자산 등은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자산을 매각하여 정리할 때는 매출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매출부가가치세에 산입하고 이 금액과 기존 매입부가가치세의 금액을 비교하여 매출부가가치세의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에 매각하는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매각금액이 높으면 그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또한 자산의 매각금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같거나 더

낮으면, 청산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직권으로 금액이 높은 시장가격으로 매각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자산의 폐기 및 처분은 회사가 직접 진행하거나 폐기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 폐기하는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전문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 업체의 이용은 세무당국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세허가(Kawasan Berikat)나 보세창고허가(Gudang Berikat) 업체는 원부자재와 같은 재고자산을 폐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주재하고 있는 세관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폐기하면 수입할 때 유예 받은 관세와 소득세,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IV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해산 상세 프로세스

1.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에 따른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 …… 54
2.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OSS)상에서의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 진행 …… 69
3.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 72

IV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해산 상세 프로세스

1.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에 따른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

1) 회사의 합병, 인수, 통합 및 해산의 정의

(1) 주식회사법 제1조 제9호에 따른 "합병 또는 흡수합병" 및 일자리 창출법 제109조 제1호 jo에 따른 "합병(Penggabungan 또는 merger)"이란 하나 이상의 회사가 기존의 다른 회사와 합병함으로써 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에 이전되고, 그 후 합병된 회사의 법인격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병 시 피합병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법인의 지위가 종료된다.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로 완전히 이전된다.

(2) 주식회사법 제1조 제11호와 일자리 창출법 제109조 제1호 jo.2에 따른 인수(Pengambilalihan 또는 aquisisi)는 법인 또는 개인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인수 시에는 주식을 양수한 회사가 해산하거나 소멸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경영권 보유자만 변경될 뿐 법인은 해산하지 않는다. 인수 시 피인수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주식을 인수한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3) 주식회사법 제1조 제10호와 일자리 창출법 제109조 제1호 jo.2에 따른 신설합병(Peleburan 또는 konsolidasi)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통합하는 법률행위로, 법률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합병회사의 법인격은 법률에 따라 소멸한다. 쉽게 말해, 신설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를 해산하여 합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주식회사법 제142조 1항에 따른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주총회의 결정
나) 정관에 명시된 설립 존속기간의 만료
다) 법원의 명령
- 회사가 공익을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사 해산을 신청한 경우
- 회사 설립정관에 하자가 있어서 당사자가 해산을 신청한 경우
-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이 회사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라)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상사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이 취소된 경우, 회사의 파산재산이 파산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파산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
바) 회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5) 해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이사회, 감사회 및 1인 혹은 다수인 주주로서 합쳐서 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와 회사 해산을 제안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투표권이 있는 총 발행주식의 3/4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 주주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차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일 경우에는 2차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2차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 2/3 이상의 참석에 참석 주주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금하며 청산 절차만 밟아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 후 청산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승인하는 순간 회사는 법인 자격을 상실하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일간지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청산인은 청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을 통보하고 채권 등록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산을 통보해야 한다. 청산인이 신문 및 관보에 공시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청산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 등록을 하고자 노력했으나 청산인이 채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록을 거부당한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회사의 존립 기간 소멸로 인한 해산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상술한 가)항과 유사하다.

다)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인한 해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청원에 의거하여 지방법원은 회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검찰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 회사 설립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 세무서에 제출한 휴업보고서에 근거하여 3년간 휴업을 한 경우, 대부분 주주의 소재가 불명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양 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대 50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회사 자산의 감소로 더는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주 이사회 혹은 감사회는 지방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 법원의 해산명령에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은 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후는 상술한 가)항과 유사하다.

라) 파산선고로 인한 해산

• 파산선고 청구 자격이 있는 자

① 채권자

②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한 경우, 채무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돈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 해결에 비협조적 혹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경우, 검찰의 판단에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검찰이 파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④ 채무자가 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 및 보증기관인 경우에는 증권시장 감독원

⑤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 업종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 파산선고의 조건 및 소요 기간

①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그 중 한 채무가 만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체불 임금, 체납 세금, 연체 차입금, 연체 임차료, 미불 외상 매입금, 미불 용역비, 미불 공사비 등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며 만기가 된 채무는 모두 해당한다.

② 파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상사법원: 최장 60일 이내
- 대법원: 최장 60일 이내

• 파산선고의 효과

① 파산선고 즉시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권이 파산관리인에게 넘어간다.

② 소송권도 파산관리인에게 넘어가며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파산관리인으로 바뀐다.

③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동결된다.

④ 이미 설정된 담보권은 파산선고일로부터 최장 90일간 집행이 중지된다.

집행 중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담보권 보유자는 담보권을 집행해야 한다. 담보권을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이 파산관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파산재산이 파산비용을 지불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거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파산관리인이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마)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해산

은행 혹은 보험회사처럼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는 이런 경우 해산해야 한다. 흡수합병 또는 통합합병에서 합병을 당하는 회사는 해산의 절차 없이 합병을 하는 회사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합병하는 회사는 존속한다. 합병을 당하는 회사의 모든 자산은 자동으로 합병을 하는 회사의 소유가 된다. 반면 통합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한 개의 회사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두 개 이상 회사의 자산이 새로 설립된 한 개 회사의 자산이 된다.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계획을 작성하여 먼저 감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합병계획서를 요약하여 일간지에 공시하고 서면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합병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합병계획이 일간지에 공시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합병계획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를 이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채권자의 이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이의를 해결할 때까지 합병을 금한다.

2) 회사의 합병, 인수, 통합의 특성

(1) 흡수합병의 특성

a. 합병하는 회사와 합병을 수락하는 회사가 있다.

b. 존속회사는 계속 존속하고, 합병회사는 청산 없이 법에 따라 해산한다.

c. 합병계획과 합병증서 초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합병증서 초안은 인도네시아어로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합병증서에 명시되어 있다.

e. 일부 합병은 정관(AD) 개정이 뒤따르며, 일부 합병은 정관 개정이 뒤따르지 않는다.

f. 정관 개정이 뒤따르는 일부 합병은 법무부 장관(멘후캄)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합병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

g.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정관 개정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날짜에 합병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h. 합병 후 법무부 장관에게 충분히 통지된 정관 변경은 합병증서 및 정관 변경 증서를 회사 등기부에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날에 합병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i. 정관 개정이 뒤따르지 않은 합병은 공증인 앞에서 합병증서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날짜에 합병회사는 청산 없이 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합병증서 사본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회사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j. 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법률에 따라 일반적 소유권에 의해 존속회사에 이전된다.

(2) 인수의 특성

a. 인수하는 회사(인수 회사)가 있고 피인수 회사(인수 대상 회사)가 있다.

b. 인수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c. 주식 취득은 주식의 형태로 소유권이 실현되므로 유한책임회사(PT) 형태의 피인수 회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d. 자산 인수는 개별 회사(Usaha dagang dan perusahaan dagang), 파트너십(CV 및 Firma), 법인(PT 및 Koperasi)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e.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인수 회사는 인수하기 전에 먼저 피인수 회사의 주주총회로부터 인수를 승인 받아야 한다.

f. 주식 취득은 일반 주식 취득과 다른데, 주식 취득의 경우 취득하는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

g.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 모두 존속한다. 그러나 일부 인수 후 합병을 통해 피인수 회사가 청산 없이 합병된 후 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h. 은행 회사 주식의 인수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장 회사 주식의 인수는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 감독청(OJK)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설합병 또는 통합의 특성

a.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b. 해산하는 회사가 청산 없이 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c.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새로운 법인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d. 합병계획과 합병증서 초안은 각각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통합 증서 초안은 공증인 앞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통합 증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f. 통합 회사의 법인 비준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통합 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g. 통합 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법의 운영에 의한 통합 회사의 해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발행된 날에 법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h.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 소유권에 근거하여 신설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로 이전된다.

3) 회사의 합병, 인수, 통합 및 해산 절차

(1) 합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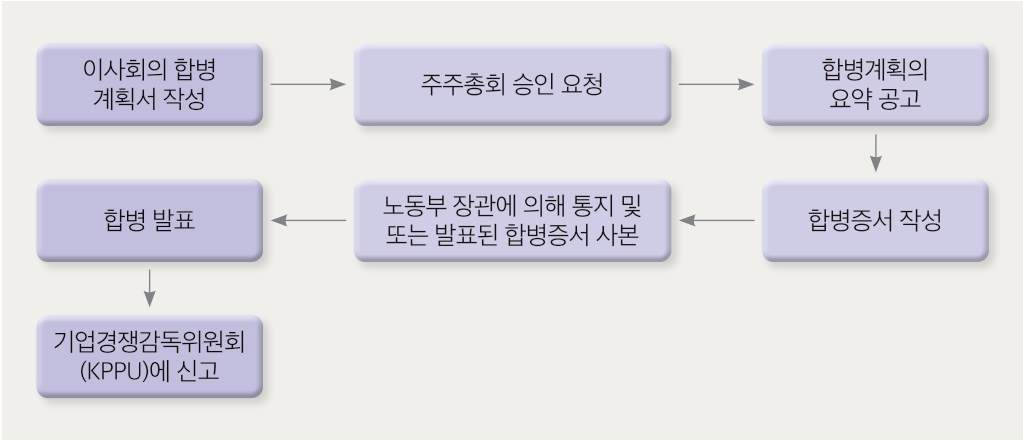

가) 이사회의 합병계획서 작성

2007년 주식회사법 제123조에 따라 합병을 하고 합병을 승인할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병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합병될 각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 합병 대상 회사 이사회의 합병 이유 및 설명과 합병 조건
-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 평가 및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을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
- 존속회사의 정관 개정 초안(있는 경우)
- 합병 대상 각 회사의 최근 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 합병 대상 회사의 사업 활동의 지속 또는 종료 계획
- 인도네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개략적인 대차대조표
- 합병 대상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감사위원회 및 직원의 지위, 권리 및 의무가 정산되는 방식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이름과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급여, 명예급 및 수당
- 합병의 예상 이행 기간

- 합병 대상 각 회사가 달성한 상태, 발전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 각 합병회사의 주요 활동 및 현재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변경 사항
- 현재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문제로서, 합병 대상 회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세부 사항

나) 주주총회의 승인 요청

합병계획은 각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

다) 합병계획의 요약 공고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계획의 요약을 적어도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늦어도 주주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이해관계인이 공고일 현재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합병계획서를 입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합병계획 발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라) 합병증서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획은 인도네시아어로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합병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마) 노동부 장관에 의해 통지 및/또는 발표된 합병증서 사본

주무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관 변경 신고서를 주무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는 합병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사의 합병에 정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증서 사본을 주무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회사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바) 합병 발표

존속회사의 이사회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1개 이상의 신문에 합병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에 신고

사업체의 합병으로 자산 가치가 2조 5,000억 루피아, 매출 가치가 5조 루피아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 발효일 기준 30영업일 이내에 KPPU에 서면으로 해당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2) 인수 절차

인수 또는 인수 절차는 회사 이사회를 통해 진행하거나 주주가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인수 절차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a. 회사 이사회를 통한 인수 절차

가) 주주총회 결의

2007년 주식회사법 제89조에 언급된 출석 정족수 및 주주총회 결의 채택 요건, 즉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주주총회에 출석 또는 대표하여 참석하고, 정관에서 더 많은 출석 정족수 또는 주주총회 조항을 정하지 않는 한 투표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인수라는 법적 행위에 관한 결의는 통과된다.

나) 회사 이사회에 대한 통지

이사회에 의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할 당사자는 인수할 회사의 이사회에 인수인계 의사를 전달한다.

다) 인수계획서 작성

피인수 회사의 이사회는 각 회사의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인수계획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a) 피인수 회사와 인수 대상 회사의 명칭 및 소재지
b) 피인수 회사 이사회 및 인수 대상 회사 이사회의 인수 이유 및 설명
c) 피인수 회사 및 인수 대상 회사의 마지막 회계연도에 대한 주식회사법 제66조 제2항에 언급된 재무제표
d) 인수 대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인수할 회사의 주식 평가 및 교환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
e) 취득할 주식의 수
f) 자금 조달의 준비 상태
g) 인도네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인수 후 인수할 회사의 가결산 연결 재무제표
h) 인수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 정산 방식

i) 인수 대상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위원회 및 직원의 지위, 권리 및 의무가 정산되는 방식

j) 주주로부터 회사 이사회로의 주식 이전 승인 기간을 포함한 예상 인수 이행 기간

k)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 정관 개정 초안(있는 경우)

라) 초안 요약 공고

회사의 이사회는 계획의 요약을 적어도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늦어도 주주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인수를 수행할 회사의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상기 공고에는 이해관계자가 공고일 현재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인수계획을 입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 채권자의 이의 제기

채권자는 초안에 따라 인수에 관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이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의 제기는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해결해야 한다. 합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인수를 실행할 수 없다.

바) 공증인 앞에서 인수 증서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취득 계획은 인도네시아어로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취득 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 장관에 대한 통지

정관 개정을 장관에게 통지할 때는 회사 인수 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아) 인수 결과의 공고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이사회는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개 이상의 신문에 취득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b. 주주로부터의 직접 인수 절차

가) 협상 및 계약

회사가 발행했거나 발행할 주식을 주주에게서 직접 취득하려면 인수 당사자는 주식에 대한 권리 양도에 관한 피인수 회사의 정관 및 회사가 다른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 등을 고려하여 주주와 협상 및 합의를 하여야 한다. 회사 형태의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직접 주식 매입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약 계획 발표

주주에게서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취득 계획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 계약 계획을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취득을 시행할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주총회에 초청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 채권자의 이의 제기

채권자는 취득 계약 계획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이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의 제기는 주주총회에 제출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수는 실행될 수 없다.

라) 공증인 앞의 인수 증서

주주에게서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공증 증서에 주식 취득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주주에게서 직접 주식을 취득하므로 주식회사법 제131조 2항에서는 이를 주식에 대한 권리 양도 증서라고 칭한다.

마) 장관에 대한 통지

주주 구성의 변경을 장관에게 통지할 때는 주식에 대한 권리 양도 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바) 인수 결과 발표

마지막 단계로 주식회사법 제133조 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이사회는 취득 결과를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공시 의무는 취득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3) 통합 절차

신설합병 또는 통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a. 합병계획

합병 대상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007년 주식회사법 제123조 1항에 따라 합병계획서에 관한 주식회사법 제123조의 규정은 합병하는 회사에도 적용된다.

b. 주주총회의 승인

합병계획은 각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법 제87조 제1항 및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즉 정관에 출석 정족수 또는 더 큰 주주총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심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투표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통과된다. 특정 회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법의 규정 외에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병의 모든 법적 행위는 다음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회사, 소액주주, 회사 임직원
- 회사의 채권자 및 기타 사업 파트너
- 사업 수행에서의 공공 및 공정한 경쟁

주식회사법 제126조 2항 및 그 해설에 따르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회사법 제62조에 언급된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회사법 제123조 제2항 다목 및 제125조 6항 라목의 해설에 언급된 대로 자신의 주식을 공정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기 권리 행사로 인해 합병의 이행 과정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c. 계획 요약의 공고

주식회사법 제127조 2항은 이사회가 계획의 요약을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늦어도 30일 전에 통합 대상 회사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공고에는 이해관계자가 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회사의 사무실에서 상기 통합 계획을 입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통합 및 인수에 관한 1998년 정부령

제27호(PP No 27/1998) 제33조 1항은 통합 회사의 이사회는 늦어도 주주총회 초청 30일 전까지 모든 채권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채권자의 이의제기

채권자는 통합 계획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이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의제기는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합병은 실행될 수 없다.

e. 합병증서 작성

주식회사법 제128조 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합병계획은 인도네시아어로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합병증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통합 증서는 통합 회사의 설립 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다.

f. 장관에 대한 신청

통합 회사의 법인 승인에 관한 장관의 법령을 얻기 위해 신청서에 통합 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g. 합병 결과의 발표

주식회사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이사회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1개 이상의 신문에 합병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4) 해산 절차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파산관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며, 청산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면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혹은 법원에서 승인해 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된다. 해산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해산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채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 채권 신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

회사를 해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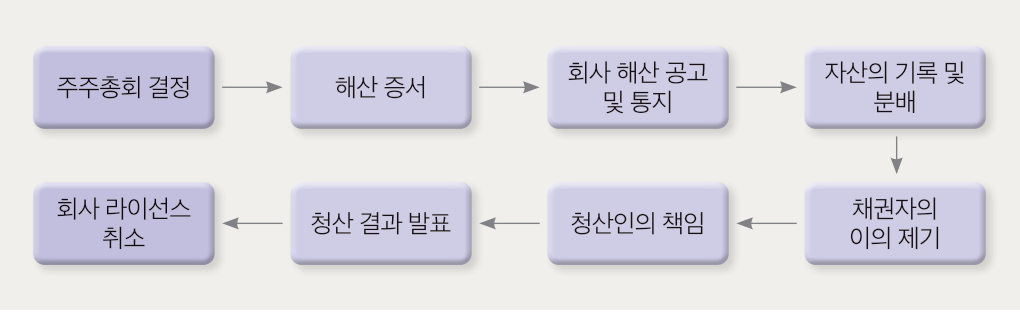

a. 주주총회 결정

이사회, 위원회 및 주주들만 주주총회에 회사의 해산을 제안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은 주식회사법 제87조 1항 및 제89조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b. 해산 증서

해산 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다.

c. 회사 해산 공고 및 통지

청산인은 신문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해산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회사의 해산과 그 법적 근거, 청산인의 이름과 주소, 청구서 제출 절차 및 청구서 제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서 제출 기간은 회사의 해산을 공고한 날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청산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회사 해산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사 해산의 법적 근거와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신문에 공고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자 및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의 해산은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인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인은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주식회사법 제148조 1항 및 2항)

d. 자산의 기록 및 분배

주식회사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 청산 절차에서 회사 자산을 관리할 때 부담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고 회수

나) 청산 수익금의 자산 분배 계획을 신문과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관보에 공고

다) 채권자에게 정산수익금의 잔여 자산을 지급

라) 청산 수익금의 잔여 자산을 주주에게 지급

마) 자산 관리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 조치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자산보다 많다고 판단하면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고 신원과 주소를 알 수 있는 모든 채권자가 파산 외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의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법 제149조 2항)

e. 채권자의 이의 제기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 종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산에 따른 자산의 분배 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산인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채권자는 기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채권자는 회사의 해산 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출한 청구서는 청산 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는 청구금액 대비 수령한 금액에 비례하여 잔여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주식회사법 제150조 3항, 4항 및 5항). 청산인이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장은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고 종전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해임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f. 청산인의 책임

청산인은 회사의 청산과 관련해 주주총회 또는 그를 선임한 법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관리인은 회사의 청산과 관련해 감독 판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g. 청산 결과 발표

청산인은 주주총회가 청산인에게 석방 및 면책을 허가한 후 또는 법원이 청산인이 선임한 청산인의 책임을 승인한 후 법무무 장관에게 통지하고 청산 절차의 최종 결과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감독 판사가 책임을 인정한 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무 장관은 회사의 법인 지위 만료를 기록하고

회사 등기부등본에서 회사의 이름을 삭제한다. 이 조항은 합병, 통합 또는 분할로 인해 회사의 법인 지위가 만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청산 결과는 청산인 또는 관리인의 책임이 주주총회, 법원 또는 감독 판사에 의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및 발표되어야 한다. 청산 단계는 법무무 장관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관보에 회사의 법인 지위 종료를 발표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h. 회사 라이선스 취소

사업자 식별번호(NIB), 납세자 식별번호(NPWP), 과세 사업자 확인서(SPPKP) 등의 회사 라이선스는 취소된다.

2.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OSS)상에서의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 진행

1) OSS 시스템에서의 합병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 서비스 및 투자 시설에 대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투자조정위원회 규정 4호(Perka BKPM 4/2021)는 다음과 같이 합병을 규제한다.

(1) 사업체 합병 시, 합병을 받는 사업 행위자(존속회사)는 사업체 합병 메뉴를 통해 OSS 시스템 내 데이터를 조정/업데이트해야 한다.
(2) OSS 시스템은 데이터 조정/업데이트에 대해 법제처 및 인권 분야 정부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인 관리 시스템에서 합병증서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3) 유효성 검사가 완료되면 OSS 시스템은 존속 및 합병 법인이 소유한 모든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표시한다.
(4) 사업 행위자는 합병증서에 명시된 대로 계속할 사업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5) OSS 시스템을 통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고 계속할 비즈니스 활동이 있는 경우, 합병을 수락하는 사업체는 비즈니스 활동 데이터를 입력하고 기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OSS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6) OSS 시스템은 합병의 결과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7) 확인 결과에 따라 OSS 시스템은 기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위험 기반 비즈니스 라이선스로 조정한다.

(8)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합병한 경우, 합병된 사업체는 사업 활동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 활동의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기반 사업 허가를 신청한다.
(9) 합병된 사업체의 사업 라이선스는 OSS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취소된다.

2) OSS 시스템에서의 인수

인수 시에는 회사의 지배주주만 변경되므로 주식을 인수한 법인은 해산 또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즈니스 행위자는 OSS 시스템에서 소유권 및 주주 구성의 변경과 같은 데이터 변경을 수행해야 한다. OSS 시스템은 법률 및 인권 분야의 정부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인 관리 시스템에서 주식 소유권 구성을 검증한다.

3) OSS 시스템에서의 신설합병 또는 통합

2021년 BKPM 규정 4호는 다음과 같이 합병을 규제한다.

(1) 사업체 통합 신청은 사업체 통합 메뉴를 통해 통합에 따른 새로운 사업체가 수행한다.
(2) OSS 시스템은 법률 및 인권 분야의 정부 업무를 조직하는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인 관리 시스템에서 통합 증서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3) 유효성 검사가 완료되면 OSS 시스템은 합병된 사업체가 소유한 모든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표시한다.
(4) 사업 행위자는 합병증서에 명시된 대로 계속될 합병 사업체의 사업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5) 피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OSS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지 않고 계속될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사업 활동 데이터를 입력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한다.
(6) OSS 시스템에서 연결 사업자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에 따라 OSS 시스템은 기존 사업자 라이선스를 위험 기반 사업자 라이선스로 조정한다.
(7) 사업 통합으로 인한 사업 활동 중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 활동이 있어서 사업 활동의 적법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 통합에 따른 새로운 사업체는 사업 활동의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8) 합병된 사업체의 사업 허가증은 OSS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취소된다.

4) OSS 시스템에서의 해산

해산 시 사업자는 소유한 모든 사업 라이선스를 취소해야 한다.

(1) 회사의 합병, 인수, 통합 및 해산에 따른 라이선스 조정

a. 합병 라이선스 문서

회사가 합병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작성 및 조정해야 하는 인허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나) 신문 공고

다) 합병증서를 위한 주주총회

ㄱ) 합병증서

ㄴ) 장관 승인 및/또는 장관에 대한 통지

ㄷ) 합병으로 자산 가치가 2조 5,000억 루피아, 매출 가치가 5조 루피아가 되는 경우 KPPU에 통지

ㄹ) OSS 데이터 조정

ㅁ) 합병회사의 NPWP 제거 및 SPPKP 취소

b. 인수 라이선스 문서

회사가 인수할 때 수행 및 조정해야 하는 인허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신문 공고

나) 주주총회

다) 인수 증서

ㄱ) 장관 승인 및/또는 장관에 대한 통지

ㄴ) 주식 매매 증서 또는 주식 매입서

ㄷ) OSS 데이터 조정

c. 신설합병 또는 통합 라이선스 문서

회사가 통합할 때 수행 및 조정해야 하는 인허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주총회

나) 신문 공고

다) 합병증서

ㄱ) 장관 승인 및/또는 장관에 대한 통지

ㄴ) OSS 데이터 조정

ㄷ) 피합병회사의 NPWP 폐지 및 SPPKP 취소

d. 해산 라이선스 문서

회사 해산으로 인해 수행 및 조정해야 하는 인허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주총회

나) 신문 공고

다) 해산 증서

ㄱ) 장관에 대한 회사 해산 통지

ㄴ) 관보(BNRI)에 공고

ㄷ) OSS의 사업 면허 취소

ㄹ) NPWP 삭제 및 SPPKP 취소

3. 회사의 합병, 통합, 인수 및 해산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회사의 합병, 인수 또는 통합으로 회사와 직원 간의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는다. 이는 2003년 노동법 제13호(법률 13/2003호) 제6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회사를 양도하는 경우, 근로자/노동자의 권리를 감소시키지 않는 양도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근로자/노동자의 권리는 새로운 고용주가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2020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제11호(일자리 창출법) 제81조 4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 회사가 회사를 합병, 통합, 인수 또는 분리하고 근로자/노동자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고용주가 근로자/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회사가 효율화 조치를 수행한 후 회사를 폐쇄하거나 회사가 손실을 입어 회사를 폐쇄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손실을 경험하여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따라서 합병, 인수, 통합을 하는 회사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계속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회사의 합병, 인수, 통합 및 해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종료 시 직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2021년 정부령 제35호(PP No 35/2021) 제41조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회사가 회사의 합병, 통합 또는 분리를 수행하고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고용주가 근로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다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제40조 2항에 규정된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퇴직금
b. 제40조 3항의 1배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 수당
c.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대체금

2) 2021년 정부령 제35호(PP No 35/2021) 제42조 1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회사의 인수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다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제40조 2항의 1배에 해당하는 퇴직금
b. 제40조 3항의 1배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 수당
c.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대체금

3) 2021년 정부령 제35호(PP No 35/2021) 제42조 2항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인수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고 근로자/노동자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다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제40조 2항에 규정된 금액의 0.5배의 퇴직금
b. 제40조 3항의 규정의 1배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 수당
c.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대체금

4) 2021년 정부령 제35호(PP No 35/2021) 제44조 1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회사가 2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을 경험하거나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손실을 경험하지 않아 회사가 폐쇄된 이유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다음을 수령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

a. 제40조 2항에 규정된 금액의 0.5배의 퇴직금
b. 제40조 3항의 규정의 1배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 수당
c.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대체금

5) 2021년 정부령 제35호(PP No 35/2021) 제44조 2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회사의 손실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 폐쇄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다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제40조 2항에 규정된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퇴직금
b. 제40조 3항의 1배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 수당
c.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대체금

또한 퇴직금 및 보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정부령 제40호(PP No 40/2021) 제3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계산

a.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임금
b.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개월 임금
c. 근속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임금
d. 근속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4개월 임금
e. 근속 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5개월 임금
f. 근속 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6개월 임금
g. 근속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7개월 임금
h. 근속 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8개월 임금
i. 근속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9개월 임금

2) 2021년 정부령 제40호(PP No 40/2021)의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 근속 보너스 금액의 계산

a. 근속 기간이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2개월 임금

b. 근속 기간이 6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임금
c. 근속 기간이 9년 이상 12년 미만인 경우, 4개월 임금
d. 근속 기간이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5개월 임금
e.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 6개월 임금
f. 근속 기간이 18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7개월 임금
g. 근속 기간이 21년 이상 24년 미만인 경우, 8개월 임금
h. 근속 기간이 24년 이상인 경우, 10개월 임금

3) 2021년 정부령 제35호(PP No 35/2021)의 제40조 4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상환
a. 아직 사용하지 않은 취소되지 않은 연차 휴가
b. 근로자/노동자 및 그 가족을 처음 고용된 곳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용 또는 수수료
c. 기타 근로 계약, 회사 규정 또는 단체 노동 계약에 명시된 사항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지급 수준	근로관계 해지 사유
해고보상금 2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 장기간 질병 또는 산재로 12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근로자가 사망하여 근로관계의 종료
해고보상금 1.75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 근로자 정년도달
해고보상금 1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 흡수합병, 신설, 분할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회사의 인수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효율성을 발동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회사의 손해 이외의 사유로 폐업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회사의 손해 이외의 사유로 부채 상환이 지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사용자의 부당행위(근로자 모욕/위협, 불법행위 지시,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계약되지 않은 업무 지시 등)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해고보상금 0.75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 회사 폐업을 야기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지급 수준	근로관계 해지 사유
해고보상금 0.5배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 회사의 인수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 회사가 손실을 입어 효율성을 발동해야 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회사가 2년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폐업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불가항력으로 회사가 폐업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회사가 손해를 입어 부채지급의무가 지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회사의 파산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 규정 위반으로 6개월간 유효한 경고장을 연속으로 3회 받아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근속보상금 1배 손해보상금 1배	- 회사에 손해가 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범죄혐의로 당국에 구금되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손해보상금 1배 계약, 사규, 단협에 따른 전별금 지불	- 근로자의 자진퇴사 - 근로자의 5일 이상 무단결근 및 사용자의 2회 서면 소환 -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에 규정된 시급한 위반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요구 - 근로자가 범죄혐의로 당국에 구금되어 6개월간 일을 못했거나, 6개월 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V

파산청산

1. 인도네시아에서의 파산청산 ····· 80
2. 파산의 정의 ····· 80
3. 파산의 원인 ····· 81
4. 파산 절차 규정 ····· 81
5. 파산신청 요건 ····· 82
6. 인도네시아 상사법원 목록 ····· 83
7. 파산 절차 ····· 84
8. 파산선고에 따른 해산 ····· 84
9. 파산과 지급 불능/부도의 차이점 ····· 86
10. 파산의 법적 효력 ····· 86
11. 인도네시아 파산법 ····· 87

IV 파산청산

1. 인도네시아에서의 파산청산

파산은 채무자, 즉 개인 또는 사업체가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의 지불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PT ABC는 모든 법적 결과와 함께 파산을 선언한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 상사법원 판사의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전에 PT ABC는 채무상 환의무유예(PKPU) 지위를 신청했었다. PKPU 신청이 승인된 이후, PT ABC는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 계획이 포함된 화해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정된 43일 동안 PT ABC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PT ABC의 임시 PKPU 지위에는 기간의 연장과 파산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다. 불행히도, PT ABC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PT ABC는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파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위험은 새로 설립된 기업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기업도 직면할 수 있다.

2. 파산의 정의

파산은 채무자, 즉 개인 또는 사업체가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를 완납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파산에 관한 2004년 법률 제37호(파산 및 지급불능에 관한 법률, KPKPU)에서 파산을 자세히 규제하고 있다. 2004년 파산법 제37호(파산법 No 37/2004)에 따르면 파산은 파산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이 법에 규정된 대로 감독 판사의 감독 하에 파산관리인(Kurator)이 관리 및 청산작업을 수행한다.

파산관리인은 파산법에 따라 감독 판사의 감독 하에 파산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 및 집행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부동산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파산법은 원래 해결되지 않은 채무 및 신용거래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겨났으며, 현재는 채무 및 신용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신속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파산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3. 파산의 원인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파산에 빠질 수 있다.

1) 회사 소유주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회사를 파산 직전에 빠뜨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생 기업은 회사 관리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오래된 기업은 소비자 수요를 포착하기가 어려워 파산에 빠지기 쉽다.
2) 회사가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사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면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파산을 피하기가 어렵다.
3) 회사가 혁신을 멈추거나, 정보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할 때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지 않는 회사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혁신을 멈추지 않는 등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파산 절차 규정

인도네시아에서의 파산 절차는 2004년 제37호 법률 “파산 및 부채 상환 연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파산 절차의 일반적인 개요이다.

1) 파산 신청: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은 현지 상사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기업 자체 또는 채권자가 할 수 있다.

2) 신청 조사: 상사법원은 파산 신청을 조사하고 파산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면 파산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고 및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기업의 파산을 공고한다. 해당 공고는 신문에 게재되고 등록된 채권자에게 공지된다.
4) 관리인 임명: 상사법원은 파산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파산관리인을 임명한다. 파산관리인은 기업의 모든 자산을 수집하고 수입과 채무 목록을 작성한다.
5) 채무 상환 연기: 기업이 재정을 회복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 상환을 연기할 기회를 기업에 부여할 수 있다. 채무 상환 연기는 채권자에게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기업에 부여한다.
6) 채무 상환: 채무 상환 연기가 받아들여지고 기업이 재정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 절차를 중단하고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7) 청산: 구조조정 계획에 관해 합의가 없거나 구조조정 계획이 실패한 경우, 법원은 기업의 청산 절차를 진행시킨다. 청산을 통해 기업 자산은 매각되고 그 수익은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5. 파산신청 요건

2004년 인도네시아 파산법 제37호(파산법 No 37/2004) 제1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회사의 파산 여부는 오직 관할 상사법원에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절차가 있다.

파산법 제2조 1항과 제8조 4항에 따르면 상사법원에 위임된 파산 신청은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고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하나 이상 전액 지불하지 않은 채무자가 자신의 요청 또는 채권자 중 한 명 이상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2) 채무자에게 채무 대출을 제공하는 채권자가 존재하며, 이때 채무자는 개인 또는 사업체일 수 있다.

3) 만기가 도래하고 회수 가능한 채무가 다수 존재하며, 채무는 계약, 징수 시간 단축, 제재 또는 벌금, 법원 및 중재자 결정에 따른 것일 수 있다.

4) 관련 기관이 파산선고를 요청한 경우

6. 인도네시아 상사법원 목록

1999년 대통령령 제97호(Peraturan Presiden No 97/1999)는 다음과 같이 상사법원 목록과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중부 자카르타 상사법원	DKI 자카르타, 서부 자바, 반텐, 남부 수마트라, 람풍 및 서부 칼리만탄주를 관할
마카사르 상사법원	남부 술라웨시, 남동 술라웨시, 중부 술라웨시, 북부 술라웨시, 말루쿠 및 이리안 자야주를 관할
스마랑 상사법원	중부 자바 및 족자카르타 특별 지역을 관할
수라바야 지방 상사법원	동부 자바, 남부 칼리만탄, 중부 칼리만탄, 동부 칼리만탄, 발리, 서부 누사떵가라 및 동부 누사떵가라주를 관할
메단 상사법원	북수마트라, 리아우, 서수마트라, 벵쿨루, 잠비 및 아체 특별지역을 관할

7. 파산 절차

인도네시아에서 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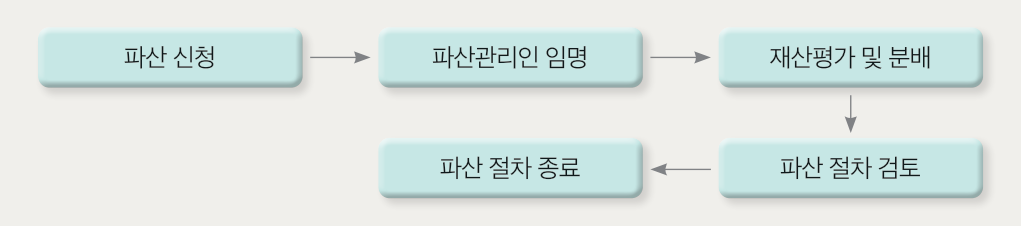

1) 파산 신청: 파산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파산을 주장하는 이유, 채무의 규모와 종류, 재산 상태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2) 파산관리인 임명: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파산 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파산관리인을 임명한다. 파산관리인은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상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재산평가 및 분배: 파산관리인은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들에게 먼저 상환을 하고, 남은 재산은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파산 절차 검토: 법원은 파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채권자들의 이의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이유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5) 파산 절차 종료: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파산자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기업의 운영을 정리하는 등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후에 파산자는 채권자들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8. 파산선고에 따른 해산

1) 파산선고 청구 자격이 있는 자

1) 채권자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한 경우, 채무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자금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 해결에 비협조적이거나 성실하지 않은 자

세로 임하는 경우, 검찰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검찰이 파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4) 채무자가 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 및 보증기관인 경우에는 증권시장 감독원

5)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 업종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2) 파산선고 조건 및 소요 기간

파산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채권자가 둘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한 채무가 만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체불 임금, 체납 세금, 연체 차입금, 연체 임차료, 미지급 외상 매입금, 미지급 용역비, 미지급 공사비 등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며 만기가 된 채무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파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상사법원: 최장 60일 이내
- 대법원: 최장 60일 이내

3) 파산선고의 효과

① 파산선고 즉시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권이 파산관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② 소송권도 파산관리인에게 넘어가며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파산관리인으로 바뀐다.

③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동결된다.

④ 이미 설정된 담보권은 파산선고일로부터 최장 90일간 집행이 중지된다.

집행 중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담보권 보유자는 담보권을 집행해야 한다.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이 파산관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파산재산이 파산 비용을 지불하는 데도 충분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거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산이 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면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청산관리인이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9. 파산과 지급 불능/부도의 차이점

오늘날 많은 사람이 파산과 지급 불능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다르다. 지급 불능은 회사가 큰 손실을 입어 재무 상태가 불건전해져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사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재무 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 불능 선고를 받은 회사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파산 상태는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갚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지급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더는 회사 자산이 없고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지급 불능에 이르게 된다.

10. 파산의 법적 효력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 결정문을 읽는 순간부터 파산재산에 포함된 자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파산법 37/2004 제22조에 따르면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면제 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채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동물, 장비,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채무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침대 및 장비, 채무자와 그 가족이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식료품 등
2) 채무자가 자신의 근로로 얻은 임금, 연금, 또는 수당으로 사무실이나 서비스에서 급여로 받은 모든 것 중에서 감독 판사가 결정한 범위까지 포함
3) 채무자가 법정 부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지급된 금전

이 재산의 관리는 감독 판사의 감독을 받아 파산관리인에게 이관되므로 파산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파산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인도네시아 파산법

인도네시아에서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파산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파산법을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파산법(Undang-undang No 37 Tahun 2004)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파산법 (Undang Undang Kepailitan)

제1장 일반규정 (KETENTUAN UMUM)

제2장 파산 (KEPAILITAN)

I. 파산의 조건과 파산결정 (Syarat dan Putusan Pailit) 2조 - 20조

II. 파산의 결과 (Akibat Kepailitan) 21조 - 64조

III. 파산자산의 처분 (Pengurusan Harta Pailit)

감독 판사 (Hakim Pengawas) 65조 - 68조

파산관리인 - 큐레이터 (Kurator) 69조 - 78조

채권자위원회 (Panitia Kreditor) 79조 - 84조

채권자회의 (Rapat Kreditor) 85조 - 90조

판사의 결정 (Penetapan Hakim) 91조 - 92조

IV. 파산선고 후의 조치 및 파산관리인의 의무 93조 - 112조
(Tindakan Setelah Pernyataan Pailit dan Tugas Kurator)

V. 채권의 매칭 (Pencocokan Piutang) 113조 - 143조

VI. 화의 (Perdamaian) 144조 - 177조

VII. 파산 자산의 청산 (Pemberesan Harta Pailit) 178조 - 203조

VIII. 화의 만료 후 채무자의 법적 상황 204조 - 206조
(Keadaan Hukum Debitor Setelah Berakhirnya Pemberesan)

IX. 상속 자산의 파산 (Kepailitan Harta Peninggalan) 207조 - 211조

X. 국제법 (Ketentuan-ketentuan Hukum Internasional) 212조 - 214조

XI. 복권 (Rehabilitasi) 215조 - 221조

제3장 부채 상환 의무의 연기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
I. 부채 상환 의무의 연기의 결과 222조 - 264조
(Pemberian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 dan Akibatnya)
II. 화의 (Perdamaian) 265조 - 294조
제4장 재심 신청 (PERMOHONAN PENINJAUAN KEMBALI) 295조 - 298조
제5장 기타 규정 (KETENTUAN LAIN-LAIN) 299조 - 303조
제6장 경과 조항 (KETENTUAN PERALIHAN) 304조 - 305조
제7장 종결 규정 (KETENTUAN PENUTUP) 306조 - 308조

제2장 파산 (KEPAILITAN)

파트 1: 파산의 조건과 파산 결정 (Syarat dan Putusan Pailit) 2조 - 20조

<파산 신청 자격이 있는 자>

파산 신청은 2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채무자가 적어도 하나의 부채를 갚지 않고 기한이 경과하여 부도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 본인 혹은 하나의 채권자 또는 그 이상의 채권자들이 할 수 있다.(2조 1항)

이외에, 파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될 수도 있다.

1) 이해당사자가 일반인인 경우 검찰청에서 제출할 수 있다.(2조 2항)
2)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인도네시아중앙은행에서 제출할 수 있다.(2조 3항)
3) 채무자가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청산보증기관, 예탁결제기관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감독원만이 제출할 수 있다.(2조 4항)
4)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기금 또는 공익분야의 국영회사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만이 제출할 수 있다.(2조 5항)

<결정 권한이 있는 법원>

- 파산선고 신청 및 이 법과 관련되거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문제에 대한 결정은 법적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시행한다.(3조 1항)

- 채무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를 떠난 경우 파산선고 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법원은 채무자의 마지막 법적 주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3조 2항)
- 채무자가 파트너를 두고 있는 회사인 경우 파트너의 법적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과 해당 회사의 법적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도 판결할 권한이 있다.(3조 3항)
- 채무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에서 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결정할 권한이 있는 법원은 그 채무자의 주소 또는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3조 4항)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주소지는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다.(3조 5항)
-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신청하려면 남편 또는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동의가 없으면 무효)(4조 2항)
- 파트너를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신청서에는 연대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파트너의 이름과 거주지가 포함되어야 한다.(5조)

<파산 신청의 수리>

- 파산 신청인이 파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등록관은 해당 신청이 접수된 날짜에 파산 선언 신청을 등록하고, 등록일과 동일한 날짜에 관할 당국이 서명한 서면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법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검토하고 심리 날짜를 정한다.
- 법원은 파산 신청이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신청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리한다.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유가 합당하면 25일 이내로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리기일 7일 전에 등기로 심리를 통보하고(8조 3항) 파산선고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파산선고 신청이 등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8조 5항)
-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와 파산관리인 및 법원 집행관에게 속달로 파산 결정을 알려야 한다.(9조)

파트 2: 파산의 결과 (Akibat Kepailitan) 21조 - 64조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파산 기간에 취득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파산이 확정된다.(21조)

- 채무자는 파산이 선고된 날로부터 파산재산에 포함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상실한다.(23조 1항)
- 파산 선언은 채무자 재산의 일부에 대한 법원의 모든 집행 명령이 취소됨을 의미한다.
- 채무자 재산의 일부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파산 선언 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강제집행은 모두 즉시 중단되며 그 이후에는 채무자를 인질로 잡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판결도 집행할 수 없다.(31조)
- 파산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다.(32조)

파트 3: 파산 자산의 처분 (Pengurusan Harta Pailit)

1) 감독 판사 (Hakim Pengawas) 65조 - 68조

- 감독 판사는 파산 자산의 관리 및 해결을 감독한다. 법원은 파산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독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감독 판사는 파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설명을 얻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조사를 명령할 권한이 있다. 증인이 파산을 결정하는 법원의 관할권 밖에 거주하는 경우, 감독 판사는 증인 신문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감독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는 항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파산관리인 - 큐레이터 (Kurator) 69조 - 78조

- 파산관리인의 임무는 파산 자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이다. 파산관리인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기관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 파산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대출을 할 수 있다. 파산관리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파산 자산을 관리 및 조직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 규정 분야의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파산관리인은 파산 자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파산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 파산관리인은 3개월마다 파산 자산 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74조 1항)

3) 채권자위원회 (Panitia Kreditor) 79조 - 84조

- 파산 결정 또는 후속 규정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 중에서 선정된 3명으로 구성된 임시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79조 1항)

- 지정된 채권자는 위원회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선임된 채권자가 그의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사망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채권자를 대신하여 감독 판사가 제안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함으로써 해당 채권자를 대체한다.(79조 3항)
- 채무 매칭이 완료된 후, 감독 판사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80조 1항)
- 채권자위원회는 언제든지 파산에 관한 문서 및 모든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81조)
- 파산관리인은 채권자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파산관리인이 채권자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파산관리인은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채권자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84조 2항)

4) 채권자회의 (Rapat Kreditor) 85조 - 90조

- 채권자회의에서는 감독 판사가 의장 역할을 한다.(85조 1항)
- 파산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85조 2항)
- 감독 판사는 최소 기간 내에 첫 번째 채권자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한다.
- 첫 번째 채권자회의는 파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86조 1항)
- 파산 신청에 대한 판결이 파산관리인과 감독 판사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파산관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채권자회의의 소집을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2) 최소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회의의 모든 안건은 총 투표자의 1/2 이상이 찬성했을 때 결정된다.(87조 1항)

5) 판사의 결정 (Penetapan Hakim) 91조 - 92조

- 파산 자산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종 사건에서 법원이 결정한다.(91조)

파트 4: 파산선고 후의 조치 및 파산관리인의 의무 93조 - 112조 (Tindakan Setelah Pernyataan Pailit dan Tugas Kurator)

- 파산선고 또는 그 이후에 감독 판사의 제안, 파산관리인의 요청 또는 다음 하나의 요청이 있으

면 1인의 채권자 또는 그 이상의 채권자는 감독 판사의 심리를 거친 후 파산 채무자를 법원의 감독하에 구치소 또는 자택에 구금할 수 있다.(93조 1항)

- 구금 기간은 구금일 기준으로 최대 30일이며(93조 3항), 최대 30일 동안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93조 4항)
- 감독 판사의 제안 또는 파산 채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금전 담보를 조건으로 파산 채무자를 구금에서 해제할 수 있다. 파산 채무자는 첫 번째 소환에 출석해야 한다.(94조 1항)
- 보증금의 액수는 법원이 정하며, 파산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파산 재단의 재산이 된다.(94조 2항)
- 파산재산과 관련된 행위로 파산 채무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파산 채무자가 구금되어 있다면 파산 채무자는 구금된 장소에서 벗어나 출석할 수 있다.(96조)

- 파산관리인은 임명이 시작될 때부터 파산재산을 확보하고 모든 문서, 금전을 보관해야 하며, 이때 보석류, 유가증권 및 기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98조)
- 파산관리인은 파산재산의 봉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봉인은 집행관이 부동산이 위치한 곳에서 두 명의 증인(그중 한 명은 지방 정부 대표)의 입회하에 시행해야 한다.(99조 2항)
- 파산관리인은 임명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파산 자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100조 1항)
- 파산 자산의 기록은 감독 판사의 승인을 받아 파산관리인이 직접 할 수 있다.(100조 2항)
- 채권자위원회 위원은 기록 작성에 참석할 수 있다.(100조 3항)
- 98조에 언급된 물건은 파산 자산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101조 1항)
- 제22조 1항에 언급된 물건은 제100조에 언급된 기록에 첨부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 파산재산의 등기 직후, 파산관리인은 파산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파산재산의 성격, 채권 및 채무 금액, 채권자의 이름과 거주지 및 각 채권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102조)
- 제100조에 언급된 파산 자산의 등기, 제102조에 언급된 등기부는 파산관리인이 파산 관재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103조)
- 채권자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파산관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재심을 위해 신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04조 1항)
- 파산관리인은 상황에 따라 파산 채무자의 생활비로 감독 판사가 결정한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106조)
- 파산관리인은 감독 판사의 승인을 받아 파산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파산관리인은 파산에 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을 신청하여도 파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판사의 승인을 받아 파산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107조 1항)
- 금전, 보석류, 유가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은 감독 판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파산관리인이 직접 보관해야 한다.(107조 2항)
- 파산재산 관리에 필요하지 않은 현금은 감독 판사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산의 이익을 위해 은행에 예치한다.(107조 3항)
- 파산 채무자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소환된 경우 감독 판사, 파산관리인 또는 채권자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110조)
- 남편 또는 아내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아내 또는 남편은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법인이 파산한 경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은 해당 법인의 경영진에게만 적용한다. 제110조 제1절의 규정은 법인의 경영진과 감사진에도 모두 적용한다.(111조)
-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비용으로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서신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112조)

파트 5: 채권의 매칭 (Pencocokan Piutang) 113조 - 143조

파산이 선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독 판사는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113조)

a. 청구서 제출 마감일

b. 세금 납부액을 결정하기 위한 해당 분야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세금 과세

c. 채권 매칭을 위한 채권자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

- 파산관리인은 제113조에 언급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주소를 알 수 있는 채권자에게는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114조)
- 모든 채권자는 계산서 또는 채권의 성격과 금액을 나타내는 진술서,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 및 채권자가 특별권, 선취특권, 신탁보증, 담보권, 저당권, 기타 물건에 대한 담보권 또는 물건을 보유할 권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15조)

<파산관리인의 의무>

-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 계산 결과를 이전에 작성한 기록 및 파산 채무자의 설명과 일치시킨다. 채권 추심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와 협의한다.(116조)
- 파산관리인은 자신이 승인한 채권을 잠정적으로 인정된 채권 목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분쟁이 있는 채권은 그 사유를 포함하여 별도의 목록에 기재한다.(117조)
- 117조에 언급된 목록에는 파산관리인의 의견에 따라 해당 채권이 질권, 담보 또는 보증에 의해 특혜를 받거나 담보되는지에 대한 메모 또는 해당 청구서에 대한 목적물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채권에 대한 재산압류권리의 집행 가능 여부 등을 기록한다.(118조)
- 파산관리인은 제117조에 언급된 각 목록의 사본을 채권 매칭일 7일 전부터 법원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119조) 파산관리인은 제119조에 언급된 목록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파산관리인은 채권자에게 채권조정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파산 채무자가 화의 계획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 계획을 언급하며 채권조정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120조)
- 파산관리인은 채권조정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감독 판사가 요청하는 파산의 원인 및 파산재산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121조 1항)
- 파산관리인은 각 채권 및 그 목록, 채권의 유효성, 우선권의 존재, 물건을 보류할 권리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124조 2항)
-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소유권의 승계인은 "채권이 존재하며 상환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라고 진술할 의무가 있다.
- 감독 판사는 채권자가 선서한 내용에 관한 증명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는 채권은 채권 목록에 이전되며, 이는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한다.(126조 1항)
- 회의록에 기록된 채권 승인은 파산 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기를 제외하고는 파산관리인이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126조 5항)

- 파산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파산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137조 3항)
- 가치가 고정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화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화폐로 전혀 명시되지 않은 채권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화로 추정된 가치로 일치시켜야 한다.(139조 1항)

-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화로 채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은 Bank Indonesia Middle Exchange를 사용하여 담보 대상의 실행일에 수행된다.(139조 3항)
- 채권 조정이 종료된 후 파산관리인은 파산 자산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는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143조 1항)

파트 6: 화의 (Perdamaian) 144조 - 177조

- 파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화의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144조)
- 파산 채무자가 화의 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조정기일 8일 전에 파산 법원에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145조 1항)
- 파산 채무자는 화의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협상 중에 화의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150조)
- 화의안은 채권자회의에서 동시출석채권자로서 권리를 인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인정한 채권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151조)
- 화의 조정이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얻은 후, 파산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의무를 설명하여야 한다.(167조 1항)
- 화의 조정에 다른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파산관리인은 파산 재단에 포함된 모든 물건, 금전, 장부, 서류 등을 유효한 영수증을 받고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167조 2항)
- 화의 권고 결정이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관리인은 가용한 파산재산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168조 3항)
- 화의 취소 요구는 파산선고 청구에 관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은 방법으로 제기 및 결정하여야 한다.(171조)
- 파산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73조)

파트 7: 파산 자산의 청산 (Pemberesan Harta Pailit) 178조 - 203조

- 모든 물건은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판매되어야 한다.(185조 1항)
- 제1항에 따른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독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적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 감독 판사가 충분한 현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산관리인은 채권 내역이 일치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88조)
- 파산관리인은 감독 판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분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189조)

<채권자에 대한 지급>

a. 다음과 같은 특권적 권리를 가진 사람

b. 질권, 신탁 보증, 저당권 또는 기타 담보권 보유자,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판매 수익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채권이 조건부로 승인된 채권자의 분배 목록에서 채권자의 지분금액은 총채권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190조)
- 일정한 권리가 있는 물건의 경우 재분배 당시 제189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질권, 신탁보증, 저당권, 저당권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저당권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이전에 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금액으로 지급된다.(199조)
- 파산관리인은 파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 판사에게 결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파산관리인이 소유하는 파산 자산에 관한 모든 장부 및 문서는 유효한 영수증과 함께 채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02조 4항)

파트 8: 화의 만료 후 채무자의 법적 상황 204조 - 206조 (Keadaan Hukum Debitor Setelah Berakhirnya Pemberesan)

- 배분 목록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미지급 채권에 대한 집행권을 갖게 된다.(204조)

파트 9: 상속 자산의 파산 (Kepailitan Harta Peninggalan) 207조- 211조

- 사망한 사람의 자산은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다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파산 상태로 선언되어야 한다.(207조)

a. 사망자의 빚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다.
b. 사망자의 상속 재산이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 제207조에 언급된 신청서는 사망한 채무자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208조), 관할 법원은 신청과 관련하여 상속인을 소환해야 한다.
- 파산 선언은 법에 의해 사망자의 자산과 그의 상속인의 자산을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209조)
- 파산 선언 신청서는 채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210조)

파트 10: 국제법 (Ketentuan-ketentuan Hukum Internasional) 212조 - 214조

- 파산선고 이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밖에 위치한 파산 자산에서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는 그 파산 자산에 대해 자신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 자산을 파산 자산으로 교체할 의무가 있다.(212조)
- 채권자 중에서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위치한 파산 자산을 획득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자산을 파산 자산으로 교체할 의무가 있다.(213조 1항)
- 채권 또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밖에서 채무를 상계하는 사람은 획득한 자산을 파산 자산으로 교체할 의무가 있다.(214조 1항)

파트 11: 복권 (Rehabilitasi) 215조 - 221조

- 제166조, 제202조 및 제207조에 언급된 파산 종료 후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파산을 선고한 법원에 복권 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215조)
- 모든 채권자가 만족스러운 채권 지급을 받았다는 증거가 신청서에 첨부되지 않는 한 채무자와 그 상속인의 회생 요청은 승인되지 않는다.(216조)
- 제216조에 언급된 복권 회생 신청은 법원이 지정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217조)
- 복권 회생을 허가하는 결정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법정 청문회에서 선고되어야 하며, 공적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221조)

제3장 부채 상환 의무의 연기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

파트 1: 부채 상환 의무의 연기의 결과 222조 - 264조
(Pemberian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 dan Akibatnya)

- 채무 상환 의무의 연기 신청은 1명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거나 그 채권자가 신청한다.(222조 1항)
- 만기가 되었고 갚아야 할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는 일부를 갚겠다는 제안이 포함된 해결 계획을 제출할 의도로 채무 상환 의무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222조 2항)
- 채무자가 은행,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청산소, 예탁결제원 및 보증기관, 예탁결제기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기금 및 국영기업인 경우, 채무 상환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제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언급된 기관이다.(223조)
- 채무 상환 의무의 연기를 위한 신청서는 신청인과 그의 변호인이 제3조에 언급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24조 1항)
- 신청자가 채무자인 경우, 채무 연기를 위한 신청서에는 채무의 성격, 채무금액, 채무를 기재한 목록과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224조 2항)
- 신청자가 채권자인 경우 법원은 청문회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을 통하여 채무자를 소환해야 한다.(224조 3항)
- 제3항의 청문회에서 채무자는 채무의 성질, 채무금액 및 채무금액을 기재한 명부와 충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결산 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224조 4항)
-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제224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 변제 의무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법원 판사 중에서 감독 판사를 임명해야 하며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할 관리인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225조 2항)
-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신청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채무 변제 의무 연기 신청서를 승인해야 하며 감독 판사를 임명하고 채무자와 함께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1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225조 3항)
- 임시 채무 변제 의무의 정지가 선고된 직후, 법원은 관리인을 통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대리인을 소환한다. 그리고 등기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채권자를 소환하여 늦어도 임시 채무 변제 의무의 정지가 선고된 후 45일이 되는 날에 열리는 심리에 출석할 것을 명한다.(225조 4항)

- 상기 4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무 변제 의무 정지가 종료되고 법원은 같은 회기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225조 5항)
- 파산관리인은 채무 상환 의무의 일시 연기에 대한 결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즉시 공고해야 하며 판사가 지정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문에는 심리 날짜, 장소 및 시간, 감독관의 이름, 경영진의 이름 및 주소와 함께 재판에 참석하라는 초대장도 포함되어야 한다.(226조 1항)
-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채무 변제를 유예하는 결산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고는 늦어도 재판 21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 채무 변제 일시 정지의 효력은 채무 정지가 선고된 날로부터 제226조 제1항의 재판이 있는 날까지이다.(227조)
- 채무 변제 유예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결정한 제225조 제4항의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는다.(228조 5항)
- 채무 상환 의무의 영구 정지를 가결한 경우에는 그 연기 및 연장은 일시 정지 결정일부터 27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기일 내에 부채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228조 6항)
- 제225조 2항에 따라 임명된 파산관리인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관리인과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한다.(234조 1항)
- 관리인이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형사 및 민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234조 2항)

파산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
2) 의무 및 책임 범위가 있는 법률 및 입법 분야의 부처에 등록된 자

- 경영진은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실수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채무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234조 4항)
- 감독 판사는 채무 변제 정지가 승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 기간 및 연장 기간 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238조 1항)
- 전문가의 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자가 제출한 채무 변제 능력 수준에 관한 근거가 첨부된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238조 2항)

- 채무 변제 의무 유예 결정이 발표된 후, 3개월마다 경영진은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보고서를 법원 등기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239조 1항)
- 채무자는 채무 변제 유예 기간에 경영진의 승인 없이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240조 1항)
-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더 이른 날짜를 정하지 않는 한, 이미 진행된 몰수는 취소되며, 채무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결정 후 즉시 채무자를 석방해야 한다. 채무 지급 의무 연기는 합의 비준 결정이 법적 효력을 얻은 후에 발생한다.(242조 2항)
- 채무자가 물건을 임차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51조 1항)
-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 또는 관례에 따른 기간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90일이다.(251조 2항)
-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선급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251조 3항)
- 채무자는 채무 상환 의무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결정이 발표된 직후,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제240조에 언급된 기간을 준수하며, 최소 45일 전에 통지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252조 1항)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독 판사, 한 명 이상의 채권자가 요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의 정지는 종료될 수 있다.(255조 1항)
  1) 채무자가 채무 상환 의무를 연기하는 기간에 자산 관리에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3) 채무자가 제240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채무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채무 상환 의무가 연기되는 기간에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260조)
- 제42조 및 제44조에 언급된 기간은 채무 변제 의무 연기 결정일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 채무자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행한 법적 조치는 관리인이 행한 법적 조치로 보아야 하며, 채무 변제 유예 기간에 발생한 채무자의 채무는 파산재산의 채무에 해당한다.
- 지연 기간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의무는 채무자의 자산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자산에 부과될 수 있다.(262조 1항)
- 위 제1항의 규정은 종전의 채무 유예가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무 유예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채무 유예 기간에도 적용한다.(262조 2항)

파트 2: 화의 (Perdamaian) 265조 - 294조

- 채무자는 채무 상환 의무의 연기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채권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265조)
- 화의안의 사본은 즉시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266조 2항)
- 화의 비준 결정이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갖기 전에 부채 상환 의무의 연기가 종료된다는 법원 결정이 있으면 화의 계획은 중단된다.(267조)

- 화의 계획이 등기관에 제출되면, 감독 판사는 다음을 결정한다.
  1) 청구서를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마지막 날
  2) 제안된 화의 계획의 날짜와 시간(감독 판사가 주재하는 채권자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
  3) 1항에 언급된 날과 2항에 언급된 날짜 사이의 유예 기간(최소 14일이어야함)

- 관리인은 채권자의 성명, 거주지, 각 채권의 금액, 채권에 대한 설명, 관리인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포함하는 채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72조)
- 이자가 있는 채권은 변제 유예 결정이 있는 날까지 이자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272조에서 규정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273조)
- 관리인과 채권자가 채권가액 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가액 전액을 조건부로 승낙하여야 한다.(274조 2항)

- 화의 계획은 다음을 기반으로 수락될 수 있다.(281조 1항)
  1) 채권자회의에 출석한 채권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2) 채권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채권이 질권, 신탁보증, 저당권 또는 재산에 대한 기타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인 경우에는 총채권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찬성
- 화의 계획에 찬성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회의에서 투표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문서에 근거하여 감독 판사가 화의 계획이 부결된 것으로 잘못 간주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회의록의 정정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283조 1항) 법원이 회의록을 수정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화의 비준 날짜로 수정해야 한다.
- 회의록의 정정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최소 8일에서 늦어도 14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283조 2항)

- 관리인은 서면으로 법원의 결정을 채권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 화의 계획이 수락되면, 감독 판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 판사는 지정된 날짜에 화의 계획의 승인을 위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관리인과 채권자는 화의 계획의 수락 또는 거절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합의의 유효성 확인을 거부해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이 화의에서 합의된 금액보다 상당히 큰 경우
  2) 화의의 이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3) 사기, 채권자와의 공모,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합의에 도달한 경우
  4) 전문가 및 관리인의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화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결정에서 채무자 파산을 선언해야 하며, 이 결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감독 판사 및 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및 제226조에 언급된 최소 2개의 일간 신문에 해당 결정을 공고한다.

- 화의 협정의 검증이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얻으면 관리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관보에 해당 사실을 발표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화의 계획이 거부되면 감독 판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7조 화의안 사본 및 회의록을 제28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여 각하 결정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각하 통지서를 받은 후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289조)
- 제3장의 규정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293조)

제4장 재심 신청 (PERMOHONAN PENINJAUAN KEMBALI) 295조 – 298조

확정적인 법적 효력을 획득한 판사의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해당 판사의 결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제295조 2항 1)의 사유에 따른 재심 청원서 제출은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5조 2항 2)의 사유에 따른 재심 청원서 제출은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 등기관은 재심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에 재심 신청을 등록하고 신청한 날짜가 기재된 서면 영수증을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법원 등기관은 재심 요청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대법원 등기소에 제출한다. 법원 등기관은 재심 요청서 사본 및 증거 사본을 요청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제출한다. 답변자는 재심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재심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 등기관은 답변서를 청구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대법원 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재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심 요청에 대한 결정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청문회에서 발표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신청서가 대법원 서기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32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사법 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법적 고려 사항이 완전히 포함된 결정서 사본을 제출한다.(298조 3항)

제5장 기타 규정 (KETENTUAN LAIN-LAIN) 299조 – 303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6장 경과 조항 (KETENTUAN PERALIHAN) 304조 – 305조

파산에 관한 1998년 법률(Faillissements-verordening Staatsblad 1905:217 juncto Staatsblad 1906:348) 제1호를 대신하는 정부 규정에 따라 개정된 모든 법률은 모순되거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유효하다.

제7장 종결 규정 (KETENTUAN PENUTUP) 306조 – 308조

이 법은 2004년 10월 18일 자카르타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TRA자료 23-198

인도네시아 구조조정 가이드북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4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 (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국내복귀지원팀
I S B N 979-11-402-0902-6 (93320)
979-11-402-0903-3 (95320)(PDF)

Copyright © 2024 by KOTRA, BANSEOK LAWFIRM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와 BANSEOK LAWFIRM INDONESIA에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구조조정 가이드북

인도네시아 GUID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